

인천광역시의회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2022. 06.



제 출 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의회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06.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김 규 원 (인)

요약

제1장 서론

- 201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2019년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였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 의정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지방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등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 업무량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실제적 활동을 반영한 의정비 제도 현실화 방안이 요구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에 상응하는 의정비의 적정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자치단체 재정 여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자율적인 의정비 범위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개편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의정비 제도의 이론적 논의, 의정비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해외 의정비 결정 사례 분석, 월정수당 결정요인 분석, 의정비 제도의 개편방안 도출 등을 수행하였음

제2장 의정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현황

1. 의정비 개념과 제도변화

-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 즉,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의정비라는 개념을 사용함(「지방자치법」 제40조 1항). 통상적으로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의미함

- 월정수당에 대한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한 개의 조문(제22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기초의회들은 별도 조례를 제정·운영함. 최근의 변화는 2019년 2월 20일 개정 이후 조례에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의정비 제도의 변화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둘째,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셋째, 의정활동비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율성이 부재하고, 사회경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2. 의정 지원제도 현황분석

- 지방의회 의정비의 최근 10년 변화를 보면, 2013년 광역자치단체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평균은 5,372만 원, 기초자치단체 평균 3,510만 원, 전체 의정비 평균은 3,639만 원이었으며, 2022년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평균은 6,017만 원, 기초자치단체 평균 4,089만 원, 전체 의정비 평균은 4,443만 원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의정활동비는 변하지 않고 월정수당이 증가한 가운데,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의정비 총액의 0.7%가 인상되었고 광역의 경우 0.6%, 기초의 경우 0.7%가 인상되었음
- 인천광역시의회는 2019년까지 월정수당 인상 없이 동결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인상 후 2021년까지 동결하였으며,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였음
- 타 광역시의 의정비 결정내역을 보면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 수, 재정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 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
- 2022년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2019년 2월 20일 개정에 의해 결정됨. 규정에 따르면 2019년에는 4,151만 원으로 2018년과 동결하고, 2020년에는 지방공무원의 인상률(2019년)의 70%를 합산한 금액인 4,207만 원, 2021년 4,207만 원 동결, 2022년에는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서 분석하였음
- 인천광역시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원들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최근 4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자립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함.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높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4년간 변화율이 -16.6%로 울산(-17.2%) 다음으로 많이 하락함
-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최소 0.9%에서 최대 3.8%까지 편차가 있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대비 낮는데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2012년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7%이던 것이 2020년에는 90.5%까지 근접함
-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기능에 따라 입법 기능, 의결 기능, 통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인천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증가했지만, 타 광역 의회의 증가 폭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의원발의 비율은 2020년보다 2021년 감소하였으며, 전체 건수도 타 광역의회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임. 의정활동실적 중 의원 1인당 의원발의 조례제·개정수를 보면 인천광역시의회의는 2018년 대비 2019년 대폭 증가했다가 2020년 감소하고, 2021년 다시 증가함

제3장 해외 주요 의정활동 지원 사례 분석

- 해외 사례의 주요 제도 내용을 보면 프랑스와 미국의 일부 주(뉴멕시코주)에서 무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일 뿐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 각종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정 기준으로는 인구수, 공무원 임금 증가율, 지자체 규모와 지역적 특성, 명목임금지수, 상위법을 고려한 지자체 보수위원회의 재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되었음. 대부분 정기적,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 및 보수 이외에 각종 의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이 함께 지급되고 있음

[표 1] 의회 의원 보수지급 해외사례 종합

구분	보수형태	보수 결정기준	보수 조정 주기	각종 수당	겸직 여부	
무급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수 명예직 · 급여 개념이 아닌 직무에 필요한 수당 지급 · 기본수당, 주거수당, 직무수당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규모별로 수당 결정 · 공무원 보수표를 기준으로 시행령에 근거하여 직무수당 책정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보수를 조정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지역 의원 수당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경비 및 여비수당 · 운영 및 수행 경비 · 사무실 및 통신수당 · 보좌진 고용 수당 · 퇴직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허용 · 겸직 수당의 합계는 기본 수당의 150%를 넘을 수 없음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없음 · 국회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시 일당 지급 · 10년 근속시 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 멕시코 주의 경우 유일하게 무급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주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금지
유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보수 및 기말수당 지급(지급액이나 방법은 조례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규모와 지역적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도의 경우 2012년도에 정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다가 2017년도에 의원 보수를 20% 감액하는 조례가 통과되어 현재까지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비(비용변상) · 정부활동비 · 기말수당(보너스)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금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보수와 직무경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임금지수를 반영해 보수 수준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7월 1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관리비 · 여비 · 교통비 및 출장비 · 품위유지 및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활동을 헌법상 관리로 보장 · 겸직으로 인해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수입에 대해 신고 의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활동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본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결정 · 지자체 규모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5월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책임수당(기관 운영비) · 회의참석수당 · 여행 및 생활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허용 · 급여 이외의 외부소득에 제한은 없으나 경제적인 사항을 의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마다 독립적으로 보수 지급 · 주에 따라 시간제와 상근 의회 존재 · 시간제 의회의원은 회기 중에 일당 지급 · 상근 입법부 의원은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 또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 · 주 의회에서 활동한 시간을 고려하여 보수 결정 · 근속연수와 직무 성과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캘리포니아 시민 보상 위원회에서 의원의 연봉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경비 · 마일리지 · 사무실 유지 및 관리수당 · 자동차 렌탈비 · 통신비 및 사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의 경우 겸직 금지

[표 2] 해외 주요국가의 실제 지급액

구분		급여
무급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의 개념이 아닌 월별 수당으로 지급 • 인구 25만 명 미만: 1,555.76€(약 210만 원) • 2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1,944.70€(약 261만 원) •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2,333.64€(약 314만 원) • 100만 명 이상 125만 명 미만: 2,528.11€(약 340만 원) • 125만 명 이상: 2,722.58€(약 366만 원)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없이 일비(회의참석 및 교통비 등) 지급 • 일비: 154달러(약 20만 원)
유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의 지방의회 의원 평균 연봉: 약 993만 엔(약 9600만 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봉 • 주의회 중 최고 급여는 Hessen주: 60.013 €(약 8000만 원) • 주의회 중 최저 급여는 Mecklenburg-Vorpommern주: 42.749 €(약 5700만 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2019년도 최고 수당은 맨체스터 시의회(인구 약 55만 명) • 연봉: £ 16,926(2,693만 원)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현재 하원의원 평균연봉 45,340달러(약 5800만 원) • 급여 이외에 교통비, 숙박비, 일비등을 추가적으로 받음 • Full-time의회 의원들의 평균연봉 82,358달러(한화로 약 1억 600만 원)

제4장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요인 분석

1. 월정수당 결정요인 정립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개요

-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요인 정립을 위하여 첫 번째, 우선 기존의 월정수당 결정기준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음. 두 번째, 포괄적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핵심역량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세 번째, 월정수당을 비롯한 의정비가 생활급적 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 형평성을 중요 고려 요소로 설정하였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월정수당의 범위와 성과반영요소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의정비 결정요인을 제시함
- 월정수당 결정요인 산정을 위한 의정비 결정요인 평가모형은 월정수당 점수(순위)와 각 지표의 점수(순위)와의 관계에 대한 것임.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과 평가 지표 간의 관계를 통해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비교·분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결정요인분석을 위한 평가모형		
평가구분	세부 영역	평가지표
행정관리 (30)	· 재정기반	-재정지급도 -경제성장률 -수출액 -지방세
	· 지역여건	-주민등록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주택보급률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1인가구 비율
주민의 삶 (40)	· 소득·일자리	-가구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소득만족도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근로여건 만족도(일자리만족도)
	· 주거·교통·환경	-자기만족률 -노후주택비율 -주거환경만족도(전반적 만족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건강·안전	-주관적 건강수준인자율 -의료서비스 만족도 -인구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지역안전등급(평균)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교육·문화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여가활동 만족도 -학교교육 효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복지·통합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 사설수 -소비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의정활동 (30)	· 입법기능	-조례안 처리 건수 -의원발의 비율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건수
	· 의결기능	-동의(승인)안 처리건수 -건의 결의안 처리건수
	· 통제기능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예결산안 처리건수

[그림 1] 월정수당 결정요인 도출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 행정관리, 주민의 삶 영역의 자료는 자료수집의 수월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e-지방지표를 활용함. 의정활동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하였음. 단,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제시된 지표 값들의 경우 공개내용과 지표 산출기준 등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자료는 기본적으로 2020년 자료를 이용하고, 2021년 자료가 없는 경우 즉, 자료수집 주기가 2년인 경우 2019년 자료를 활용함. 분석은 우선, 월정수당과 각 지표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Z값으로 표준화한 후 T값으로 전환함. 여러 지표의 종합점수 산출을 위해서 T값의 곱셈합산(기하평균)을 이용함

2. 결정요인 선정을 위한 대표요인 및 일반적 지표 적용

- 월정수당의 점수 및 순위와 각 결정요인의 종합점수 및 순위를 비교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경우 월정수당은 57.4점으로 3위를 차지해 순위가 높은 데 반해, 전체점수가 44.8로 순위가 1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정수당에 비해 결정요인의 점수와 순위가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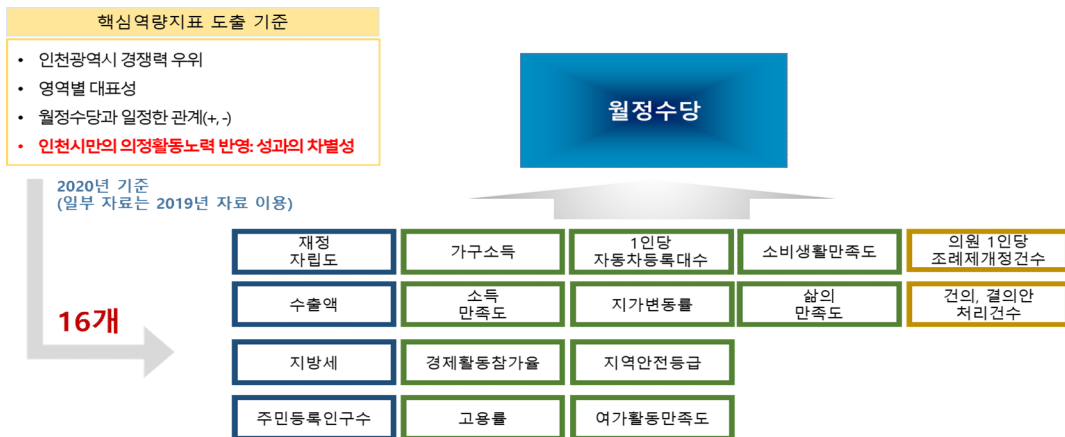
음. 이는 일반적인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 인천광역시의 의정비 수준은 타 광역의회와 비교했을 때 현재 수준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함. 다른 의미로는 인천광역시의회가 현재 수준의 의정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 주민의 삶, 의정활동 모든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해야 함

[표 3] 포괄적 평가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종합

구분	월정수당		결정요인 점수				결정요인 순위			
	점수	순위	전체	행정 관리	주민의 삶	의정 활동	전체	행정 관리	주민의 삶	의정 활동
서울	70.6	2	52.6	54.1	49.3	63.3	3	2	8	1
부산	52.4	5	46.3	49.0	44.2	49.2	15	10	16	8
대구	51.8	7	44.1	47.0	42.6	44.2	17	12	17	16
인천	57.3	3	47.6	44.8	49.4	46.3	14	16	7	12
광주	49.9	10	48.1	47.2	48.2	49.3	11	11	10	7
대전	53.3	4	47.8	46.8	50.2	41.4	13	13	6	17
울산	51.9	6	45.9	43.7	47.3	45.3	16	17	12	13
세종	35.4	17	49.4	45.2	52.9	44.9	7	15	3	15
경기	70.8	1	51.2	54.1	47.2	62.5	5	1	13	2
강원	38.4	15	51.1	51.9	52.0	46.5	6	5	4	11
충북	44.8	12	49.0	51.2	48.6	46.6	8	7	9	10
충남	50.8	8	51.4	52.3	50.3	53.8	4	4	5	3
전북	42.2	14	48.7	49.7	47.1	52.9	9	8	14	4
전남	36.3	16	52.9	51.6	54.3	50.5	2	6	2	6
경북	43.6	13	48.1	52.8	46.8	45.2	10	3	15	14
경남	49.7	11	48.1	49.3	47.8	46.8	12	9	11	9
제주	50.7	9	53.4	45.3	58.2	52.4	1	14	1	5

3. 인천광역시의회의 핵심역량지표(핵심성과지표) 제안

- 일반모형을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핵심역량지표를 도출하여 의정비 결정요인을 산출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비 산출을 위한 핵심역량지표는 인천광역시가 경쟁력 우위에 있고, 월정수당과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의정활동 노력을 반영하면서 영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 구성됨
- 본 핵심역량지표 평가체계는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적용하여 제안한 내용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는 각각의 경쟁력이 높고 주요 핵심정책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핵심역량지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 하한선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월정수당의 가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



[그림 2] 인천광역시의회 핵심역량지표 제안

- 핵심역량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은 적정함. 즉,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 순위는 3위인데, 핵심역량지표 종합점수는 53.9점, 순위는 2위로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해당 지표들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 산출기준으로 해당 16개 핵심역량지표를 고려한다면, 기존 성과에서의 노력도와 개선도 또는 성과하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4. 타 직업군과의 보수 비교분석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대내·외적 형평성을 검토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보수와 지방의원 의정비를 비교함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할범위와 대표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수당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이는 약 2.6배이고, 국회의원은 기본급적 성격의 일반수당과 부가급여형 수당의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그렇지 못함. 또한 수당의 종류를 보면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외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 수당을 거의 모두 받고 있음. 이에 반해 지방의회의원은 월정수당이라는 일반수당 외 별도의 수당이 없음
- 공무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지방의원 의정비의 인상요인이 있음. 다만 지방의원의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몇 급 대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기관장 평균 연봉 모두 지방의원 의정비보다 높음. 월정수당보다는 당연히 높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 전체를 비교하더라도, 직원은 1.2배, 기관장은 3.0배 지방의원 의정비보다 높음
-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지방의원 의정비는 중소기업 임금보다 높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보다는 낮음. 인천시 의정비는 500인 사업장 임금의 87.5% 수준이며, 직급별로 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민간기업의 관리자 임금의 1/2 수준임

제5장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의 개편방안

1. 의정비 제도의 법·제도적 개편방안

1) 지방의회 의정비 운영의 독립성 확보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원리에 입각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지만, 조직구성 및 예산 편성 권한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음. 의정비의 경우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는 “의정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사회단체·교육계·법조계·언론계,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당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금액을 결정하므로 임기 내의 경직된 의정비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이에 지방의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사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결과를 반영하는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임

2) 지방의원 보수체계 확립과 의정비 성격의 명확화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같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근무시간, 정치적 책임 및 활동의 정당성의 척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어 보수를 판단할 수는 없음. 즉, 「지방공무원법」 제4조 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원 역시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정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음
- 특히,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이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외의 수당 신설 또한 직무 활동에 상응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의정비에 속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의 성격이 각각 다른데, 월정수당은 보수의 성격을 보이고, 여비는 실비변상적 경비에 해당하지만 의정활동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음

3) 지방의원 합리적 보수 수준 향상과 겸직제도

-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범위는 의원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면서 주민대표성,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전념성과 명예직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 우리나라 지방의원은 명예직에서 시작하여 유급제로 전환하였지만, 명예직에 가까운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수라는 개념으로 일정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하는 유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의정활동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겸직제도가 ‘원칙허용, 예외 금지’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단체장과 동일하게 겸직금지 등의 영리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반원리 적용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지방의원에게 겸직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보수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따라 직무의 책임성과 어려움(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4) 지방의원의 의정비 외 재정지원 확대 검토

-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용도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이 필요할 것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경비의 규모와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 상근수당, 수당 외에 의원실당 업무추진비 등이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외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또한, 후원금 제도를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함. 2021년 1월 5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여전히 현직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후원금 지원을 할 수 없음
-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2. 인천광역시의회의 합리적 의정비 산출기준

1)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에 부합하는 의정비 수준의 적정성 확보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중 중요한 하나가 의정비임
- 물론 사회적 비판의견으로 의정비가 많다고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비가 적으면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의정활동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임
-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0년간 의정비 인상률이 2.02%로 가장 낮고, 이를 연평균으로 하면 0.202%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변화가 요구됨
- 적절한 금액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수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어느 직급 공무원의 보수 내지는 예우에 상응하여 처우할 것인지를 고려함이 더 타당함. 현재 의정비 제도와 수준에서는 의원의 생계(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질(의정활동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월정수당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차단하고 겸직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보수가 책정될 필요가 있음
-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물가변동 등

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광역의회 의원의 급여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방공무원 3급 수준 예우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공무원은 선거구와 그 지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관할범위는 단체장과 유사하지만, 실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실·국 단위로 조직되기 때문에 실·국장에 해당하는 3급 수준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타 직업군과의 보수 수준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하한선과 상한선을 제시하고자 함. 하한선(국회의원 수당금액, 성과급적 연봉제 3급 수준의 하한선, 공공기관 보수 평균 적용)은 6,900만 원 정도, 상한선(국회의원 수당과 활동비 금액, 성과급적 연봉제 3급 수준의 상한선 적용)은 10,000만 원 수준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그렇게 된다면 대략 7,000만 원~1억 원 정도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 의회 별로 차등적인 성과평가에 따라 의정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2) 의정비(월정수당) 결정기준의 적절성 및 타당성 확보

- 의정비를 결정할 때, 의원의 직무를 중요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의 단편적인 행정수요만을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됨. 좀 더 실제 행정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확대·정착하고 있는 성과 중심의 급여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즉,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여 급여의 차등을 부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인천광역시의회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핵심 성과를 측정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단, 현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의회 전체 월정수당을 산정하는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해당연도 목표 대비 평가를 수행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라 월정수당을 가감할 수 있을 것임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의정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현황	7
제1절 의정비 개념과 제도 변화	9
1. 의정비 개념	9
2. 우리나라 의정비 제도의 특성	11
3. 의정비 제도 변화	2
제2절 의정 지원제도 현황분석	6· 2
1.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	8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 분석	23
3. 월정수당 결정요인	4
제3장 해외 주요 의정활동 지원 사례 분석	5· 4
제1절 미국	7
1. 주 국회의원	7
2. 지방의회 의원	9
제2절 영국	8
1. 수당 현황	52
2. 수당 지급 기준	52
3. 지역별 사례	53
제3절 독일	5
1. 보수 현황	55
2. 보수지급 기준	55
3. 수당 종류	56

제4절 프랑스	5
1. 보수 현황	57
2. 보수 결정기준	57
3. 수당 종류	58
제5절 일본	9
1. 보수 현황	59
2. 보수 종류	60
제6절 해외 사례 분석 종합	16
제4장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요인 분석	36
제1절 월정수당 결정요인 정립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개요	56
1. 광역의회 월정수당 요인 도출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적용	56
2. 의정비 결정모형 및 분석 방법	66
제2절 결정요인 선정을 위한 대표요인 및 일반적 지표 적용	96
1. 행정관리영역	69
2. 주민의 삶 영역	73
3. 의정활동 영역	82
4. 분석결과 종합	86
제3절 인천광역시의회의 핵심역량지표 제안	78
1. 핵심역량지표 도출	8
2. 핵심역량지표를 이용한 결정요인 평가	98
제4절 타 직업군과의 보수 수준 검토	109
1. 국회의원 수당 및 재정적 지원과 비교	109
2. 지방공무원 보수와 비교	111
3. 공공기관 보수(임금)과 비교	117
4.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보수(임금)과 비교	120
5. 민간기업 급여와 비교	111
6. 종합	113

제5장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개편방안	511
제1절 의정비 제도의 법적·제도적 개편방안	711
1. 지방의회 의정비 운영의 독립성 확보	7
2. 지방의원 보수체계 확립과 의정비 성격의 명확화	8
3. 지방의원 합리적 보수 수준 향상과 겸직제도	2
4. 지방의원의 의정비 외 지원 확대 검토	7
제2절 인천광역시의회의 합리적 의정비 산출기준	9·21
1.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에 부합하는 의정비 수준의 적정성 확보	921
2. 의정비(월정수당) 결정기준의 적절성 및 타당성 확보	331
제6장 맺음말	17
참고문헌	141

표 차 례

[표 2-1] 「지방자치법」 상 의정비	9
[표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의정비	0 1
[표 2-3] 의정비 제도 연혁: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일비와 여비 지급	3 1
[표 2-4] 의정비 제도 연혁: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도입	4 1
[표 2-5] 의정비 제도 연혁: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	5 1
[표 2-6] 의정비 제도 연혁: 지방의회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6 1
[표 2-7]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제(유급제) 도입	7 1
[표 2-8]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	8 1
[표 2-9]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 결정절차 간소화	0 2
[표 2-10]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의 자율적 결정	1 2
[표 2-1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변화	2 2
[표 2-12] 일비, 회의수당, 회기수당, 월정수당 구분	3 2
[표 2-13] 의정비 제도의 변천 종합	4 2
[표 2-14] 연도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및 전년도 대비 인상률(최근 10년)	6 2
[표 2-15]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및 인상률	7 2
[표 2-16]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 월정수당 변화	9 2
[표 2-17] 서울특별시 의정비 결정내역(2018.11.27.): 제8대(지방의회 부활이후) 지방의원 ...	3
[표 2-18] 경기도 의정비 결정내역(2018.12.14.): 제8대(지방의회 부활이후) 지방의원 ...	3
[표 2-19]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2 3
[표 2-20]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추이 ...	5 3
[표 2-21] 광역자치단체 인구변화 추이	6 3
[표 2-22] 광역자치단체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재정자립도 추이	8 3
[표 2-23]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1년)	8 3
[표 2-24]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추이	9 3
[표 2-25]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	0 4
[표 2-26] 연도별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발의 건수(조례) ...	4
[표 2-27] 광역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건수	1 4

[표 2-28] 의원발의비율	24
[표 2-29] 의원1인당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	3· 4
[표 3-1] 미국 주의회 의원 보수 형태	9· 4
[표 3-2] 미국 텍사스주와 달라스시의 연봉에 관한 조항 및 정보	0· 5
[표 3-3] 미국 뉴욕주와 뉴욕시의 연봉에 관한 조항 및 정보	1· 5
[표 3-4] 영국 의회 의원 수당	2 5
[표 3-5] 영국 도시 별 2018-2019 연봉 현황	3· 5
[표 3-6] 독일 의회 의원 보수 기준	5 5
[표 3-7] 독일 의회 의원 각종수당	6 5
[표 3-8] 독일 주 별 인구수 및 연봉(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평균 총 급여)	6· 5
[표 3-9] 프랑스 의원 수당 공무원 보수 반영 비율	7· 5
[표 3-10] 2019년도 프랑스 의원 월간 수당 현황	8· 5
[표 3-11] 일본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재정적 지원 규정	9· 5
[표 3-12] 일본 지방의회의원 보수 및 수당	0· 6
[표 3-13] 일본 지방의회 의원 연봉	0· 6
[표 3-14] 해외 주요국가의 실제 지급액	1· 6
[표 3-15] 의회 의원 보수지급 해외사례 종합	2· 6
[표 4-1] 평가모형 점수산출 방법	8 6
[표 4-2] 행정관리영역 t점수	9 6
[표 4-3] 재정자립도	07
[표 4-4] 경제성장률	07
[표 4-5] 수출액	07
[표 4-6] 지방세	17
[표 4-7] 주민등록인구수	1 7
[표 4-8] 행정구역면적	17
[표 4-9] 주택보급률	27
[표 4-10] 인구 천 명당 사업체수	2 7
[표 4-11] 인구증가율	27

[표 4-12] 노령화지수	37
[표 4-13] 1인가구 비율	37
[표 4-14] 주민의 삶 영역 t점수	37
[표 4-15] 가구소득	57
[표 4-16] 1인당 지역총소득	57
[표 4-17] 소득만족도	57
[표 4-18] 경제활동 참가율	67
[표 4-19] 고용률	67
[표 4-20] 근로여건 만족도	67
[표 4-21] 지가변동률	77
[표 4-22] 노후주택비율	77
[표 4-23] 주거환경만족도	77
[표 4-24]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87
[표 4-25]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87
[표 4-2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97
[표 4-27]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	97
[표 4-28] 지역안전등급	97
[표 4-29]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08
[표 4-30] 인구 십만 명 당 문화 기반 시설 수	08
[표 4-31] 여가생활 만족도	08
[표 4-32] 학교 교육 효과	18
[표 4-33]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18
[표 4-34]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18
[표 4-35] 소비생활 만족도	28
[표 4-36] 삶의 만족도	28
[표 4-37] 의정활동 영역 t점수	38
[표 4-38] 조례안 처리건수	38
[표 4-39] 의원발의 비율	48
[표 4-40]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건수	48
[표 4-41] 동의(승인)안 처리 건수	48

[표 4-42] 건의·결의안 처리건수	58
[표 4-43]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	58
[표 4-44] 예결산안 처리 건수	58
[표 4-45] 종합점수 및 순위	68
[표 4-46] 핵심역량지표 도출	88
[표 4-47] 핵심지표 점수 및 순위	98
[표 4-48] 타 직업군 분석범위	09
[표 4-49]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규정	19
[표 4-50] 국회의원 수당 등 실제 지급 현황(2022년 기준)	39
[표 4-51] 국회의원 직급보조비(2019년 기준)	59
[표 4-52] 입법 및 정책개발비 경비 구성	59
[표 4-53] 국회의원 1인당 경비 배분(기본지원)	69
[표 4-54] 지원예산 의원실당 배정 현황(2021년 기준)	79
[표 4-55] 국회의원 수당 종합 및 비교: 수당 등	99
[표 4-56] 국회의원 수당 종합 및 비교: 수당 외 재정지원	001
[표 4-57]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11
[표 4-58] 공무원 수당체계	11
[표 4-59] 공무원 처우 개선율	11
[표 4-60]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401
[표 4-61] 성과급적연봉제 연봉한계액표(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501
[표 4-62]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61
[표 4-63] 공무원 통상임금(일부)	61
[표 4-64] 공무원 보수와 지방의원 의정비 비교(2022년 기준)	701
[표 4-65]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보수(연봉)	801
[표 4-66] 공공기관 기관유형별 기관장 보수(연봉)	801
[표 4-67] 공공기관과 비교	91
[표 4-68] 규모별 임금(2021년 기준)	91
[표 4-69] 민간기업 임금과 의정비 비교	111
[표 4-70]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수 수준 비교	111
[표 4-71]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보수 수준 비교	211

[표 5-1] 의정비심의회 구성	61
[표 5-2] 공무원 신분에 관한 판례	71
[표 5-3]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의견	91
[표 5-4] 의정비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	91
[표 5-5] 의정비 성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101
[표 5-6] 의정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101
[표 5-7]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제한 범위	321
[표 5-8]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지방의회 권한 및 책임성의 강화	421
[표 5-9]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51
[표 5-10] 정치자금법의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규정	621
[표 5-11] 지방의회 전문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721
[표 5-12] 수도권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내역 비교(월정수당을 중심으로)	821
[표 5-13] 월정수당 수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921
[표 5-14] 통신비 추가지급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103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체계	5
[그림 2-1]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1· 1
[그림 2-2] 2022년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월정수당 현황 ...	2
[그림 2-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최근 10년)	8· 2
[그림 2-4] 광역자치단체 월정수당 변화율 추이(2018년~2021년)	0· 3
[그림 2-5] 인천광역시 10년간 월정수당 변화	3· 3
[그림 2-6] 가구당 가계지출	4 3
[그림 2-7] 주민등록인구 변화율 추이	5· 3
[그림 2-8] 인천광역시 인구추계	7· 3
[그림 2-9] 재정자립도 변화율 추이	9· 3
[그림 2-10] 의원발의비율 변화율 추이	2· 4
[그림 2-11] 의원1인당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건수	3· 4
[그림 4-1]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접근	6· 6
[그림 4-2] 월정수당 결정요인 도출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7· 6
[그림 4-3] 인천광역시의회 핵심역량지표 제안	7· 8
[그림 4-4] 국회의원 수당 전체 연도별 변화	4· 9
[그림 4-5] 국회의원 수당 중 일반수당의 연도별 변화	4· 9
[그림 4-6] 후원금 체계	8· 9
[그림 4-7] 공무원 임금 인상률	9
[그림 4-8]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9
[그림 4-9] 민간기업 월평균임금 변화	11
[그림 5-1] 수도권 지방의회의 월정수당 비교(단위: 만원)	8· 2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2019년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도입 첫해인 2019년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였음
- 현재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의정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지역 자치단체 간의 지급 규모와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행정환경이 다양화·복잡화 등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업무량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실제적 활동을 반영한 의정비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에 상응하는 의정비 적정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자치단체 재정 여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자율적인 의정비 범위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개편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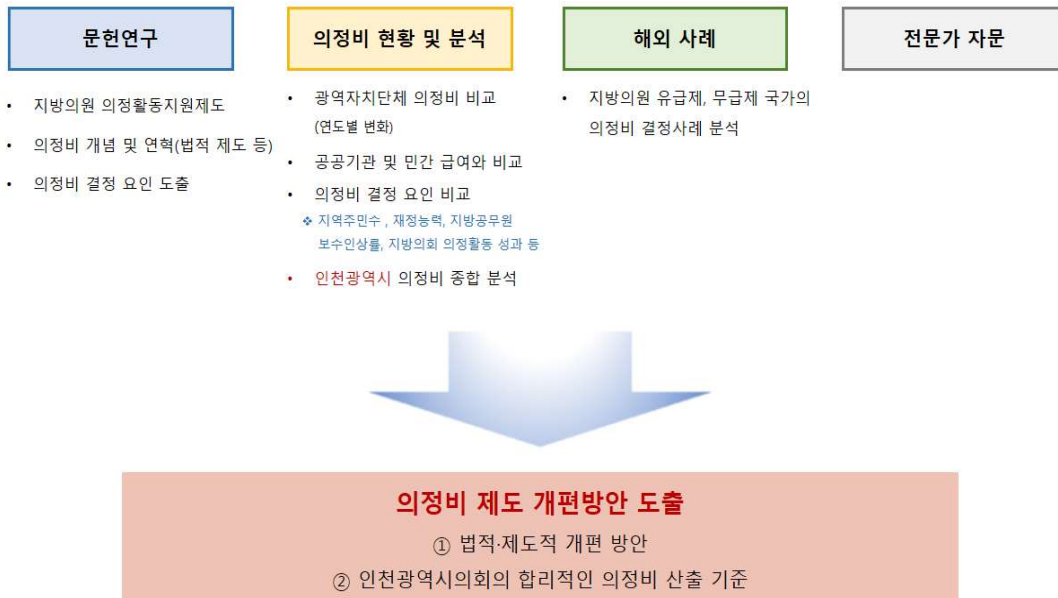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에 적정한 의정비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정비 제도의 이론적 논의
 - 선행연구를 통한 의정비 제도의 개념 및 역사적 전개과정 분석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조사를 통한 지방의원의 의정비의 결정요인 분석(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 의정비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법」 상의 의정비 지급기준식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의정비 결정사례 분석
 -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원의 의정비 결정사례 분석
 - 유급직 및 무급직 체계를 갖춘 국외사례의 분석을 통한 해외의 의정비 결정사례 비교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 결정요인(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종합분석
 - 의정비 제도의 개편방안 도출
 - 의정비 제도의 법적·제도적 변화방향 제안
 - 인천광역시의회에 합리적인 의정비 산출기준 제시

- 인천광역시의회에 적정한 의정비 산정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
 -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제도
 - 의정비 개념 및 법적·제도적 연혁
 - 의정비와 관련한 주요 이슈 도출

- 의정비 현황 및 분석
 -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비교 및 연도별 변화 분석
 - 공공기관 및 민간 급여와 비교
 - 의정비 결정요인 평가모형 도출 및 적용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 핵심역량지표 도출
- 해외사례
 - 지방의원 유·무급제 국가의 의정비 제도 비교 분석
 - 해외 사례 비교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연구결과 타당성 및 인천광역시의회 적용 적정성 검토

○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의정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의정비의 법적·제도적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체계

제2장 의정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현황

제1절 의정비 개념과 제도 변화

제2절 의정 지원제도 현황분석

제2장 의정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현황

제1절 의정비 개념과 제도 변화

1. 의정비 개념

- 의정비는 학문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개념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정비로 통칭하고 있음(고경훈, 2020; 구본충·박이석, 2014)

[표 2-1] 「지방자치법」 상 의정비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 즉,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의정비라는 개념을 사용함(「지방자치법」 제40조 1항). 통상적으로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의정비는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비: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다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분 가능함
- 월정수당: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함.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재정능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여비: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됨

[표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의정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1.13.)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우리나라 의정비 제도의 특성

- 의정비 결정 절차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2020).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그림 2-1]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회 운영조례의 한 조문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음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한 개의 조문(제22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기초의회들은 별도 조례를 제정·운영함. 최근의 변화는 2019년 2월 20일 개정 이후 조례에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1. 의정비 제도 변화

1) 연혁에 따른 변화과정

(1)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방의원: 보수가 아닌 일비와 여비 지급

- 1949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가 아닌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초를 유지함
- 다만,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제32조의 표제를 ‘의원의 보수’라고 규정하고 회기 중에 한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하고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1989년 개정에서는 일비는 회기 중에 한하여, 여비는 지방의회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더 자세히 규정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1991.4.1. 개정)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일비지급 범위를 신설하여 시·도의회의원은 5만 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은 3만 원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1994년 7월 6일 개정으로 일비 지급범위를 시·도의회의원은 6만 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은 5만 원 이내로 확대하였음

[표 2-3] 의정비 제도 연혁: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일비와 여비 지급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 1949. 8. 15.]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제16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명예직 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 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 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제32조 (의원의 보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 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 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32조 (의원의 보수)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 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 중에 한하여,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지방의회의원 일비지급범위에 대한 규정 <table border="1" data-bbox="647 1115 1337 1357"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연혁</th> <th>구분</th> <th>일비지급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방자치법 시행령(1991.4.1.개정) <별표4></td> <td>시·도의회의원</td> <td>5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30,000원 이내</td> </tr> <tr> <td rowspan="2">지방자치법 시행령(1994.7.6.개정) <별표4></td> <td>시·도의회의원</td> <td>6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5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연혁	구분	일비지급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1991.4.1.개정) <별표4>	시·도의회의원	5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30,000원 이내	지방자치법 시행령(1994.7.6.개정) <별표4>	시·도의회의원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50,000원 이내
연혁	구분	일비지급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1991.4.1.개정) <별표4>	시·도의회의원	5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30,000원 이내												
지방자치법 시행령(1994.7.6.개정) <별표4>	시·도의회의원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50,000원 이내												

(2)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도입

-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의원의 보수”라는 표현 대신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으로 규정함. 의정활동비를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조활동비의 경우 시·도의회의원만 지급하도록 규정함
-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로 구분하는데,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시·도의회의원은 월 50만 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30만 원 이내로 지급 가능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10만 원 이내로 시·도의회의원만 지급함

- 한편,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공휴일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지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원이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표 2-4] 의정비 제도 연혁: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도입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p>지방자치법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p>	<p>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지방자치법 시행령 (1995. 7. 1. 개정)</p>	<p><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619 1211 1337 1361">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의정활동비 지급범위</th> </tr> <tr> <th>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월 500,000원 이내</td> <td>월 10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월 350,000원 이내</td> <td>-</td> </tr> </tbody> </table> <p><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619 1435 1337 1552"> <thead> <tr> <th>구분</th> <th>회의수당 지급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일 6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일 5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	구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																
구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p>지방자치법 시행령 (1995. 12. 30. 개정)</p>	<p><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619 1659 1337 1865"> <thead> <tr> <th>구분</th> <th>회의수당 지급범위</th> <th>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일 60,000원 이내</td> <td rowspan="2">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일 5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구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3)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

-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참석에 따라 법정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회기수당제를 도입함

[표 2-5] 의정비 제도 연혁: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p>지방자치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p>	<p>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지방자치법 시행령 (1999. 12. 31. 개정)</p>	<p><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619 1211 1329 1361">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의정활동비 지급범위</th> </tr> <tr> <th>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월 700,000원 이내</td> <td>월 200,000원 이내</td> </tr> <tr> <td>사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월 550,000원 이내</td> <td>-</td> </tr> </tbody> </table> <p><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619 1435 1329 1637"> <thead> <tr> <th>구분</th> <th>회기수당 지급범위</th> <th>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일 80,000원 이내</td> <td>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 (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td> </tr> <tr> <td>사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일 70,000원 이내</td> <td></td> </tr> </tbody> </table>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7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사군자치구의회의원	월 550,000원 이내	-	구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80,000원 이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 (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	사군자치구의회의원	일 70,000원 이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7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사군자치구의회의원	월 550,000원 이내	-																			
구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80,000원 이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 (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																			
사군자치구의회의원	일 70,000원 이내																				

-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를 인상함.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경우 시·도의회의원은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35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각각 20만 원씩 인상하였으며, 보조활동비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됨. 이에 시·도의회의원의 전체 의

정활동비는 30만 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만 원 인상되었고, 회기수당의 경우에는 기존 회의수당과 비교해서 시·도의회의원은 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

(4) 지방의회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 2003년 7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실제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은 큰 변화가 없었음. 그리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는 단서규정도 삭제하여 기초의회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지급함
- 이어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인상함. 시·도의회의원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시·군·자치구의원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인상하였음

[표 2-6] 의정비 제도 연혁: 지방의회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 2003. 7. 18.] [법률 제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단서조항 삭제)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정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3. 12. 18. 개정)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의정활동비 지급범위</th> </tr> <tr> <th>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월 1,200,000원 이내</td> <td>월 30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월 900,000원 이내</td> <td>월 20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별표 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 변경 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회기수당 지급범위</th> <th>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의회의원</td> <td>일 80,000원 이내</td> <td>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일 70,000원 이내</td> <td>(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구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80,000원 이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70,000원 이내	(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구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80,000원 이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70,000원 이내	(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																			

(5) 월정수당제(유급제) 도입

- 현대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유급제가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됨.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였는데, 월정수당은 유급제가 사실상 시행되었다는 의미를 가짐
- 비용보전의 의미에서 월마다 정해진 수당을 받는 것으로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김선기·김권일, 2020).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7년부터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며 이후 의정활동비는 변화가 없고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범위와 기준 등에 변화가 있었음

[표 2-7]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제(유급제) 도입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p>지방자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70호, 2005. 8. 4. 일부개정]</p>	<p>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8. 4.></p>
<p>지방자치법 시행령 (2006. 2. 8. 개정)</p>	<p>제15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6)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정방식 도입

-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지역의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운영함
-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매년 30% 이상씩 의정비가 급격히 인상됨(구본충·박이석, 2014)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의정비 중 월정수당 산정기준액을 제시하고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기준 등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임
 - 재정력지수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1$
 - 지방의회 1인당 주민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0) / 자치구(0.105)

1)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지만 100%보다 낮으면 자체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불가능하여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세 혹은 재정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됨

[표 2-8]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8. 10. 8. 개정)	<p>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p> <p>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8.></p> <p>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p> <p>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별표 7>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관련)</p> <p>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p> <p>가. 계산식 지방의회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p> <p>나. 기준액(단위: 만 원/연액)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 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p> <p>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p> <p>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연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함</p>

(7) 월정수당 결정절차 간소화

- 2014년 6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4년에 한번 결정하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여론 수렴 없이(제34조 단서조항 신설)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비 결정절차를 간소화함
-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 및 산정방식은 변하지 않고, 이전에는 지급기준을 매년 정하던 것을 4년에 한번 결정하도록 함.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2-9]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 결정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4. 6. 3. 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u>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u>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u>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

(8) 월정수당의 자율적 결정

- 2008년에 도입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함. 최소항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임
- 이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제도는 일본,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프랑스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비 범위를 법령에 정하도록 하여 일종의 절충형을 취하게 함(행정안전부, 2020)

[표 2-10] 의정비 제도 연혁: 월정수당의 자율적 결정

지방자치법 등 개정 연혁	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8. 10. 30. 개정)	<p>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p> <p>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2)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변화

(1) 의정활동비

- 의정활동비가 도입된 초기인 2003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

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한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월정수당

- 월정수당은 유급제 실시에 따라 신설된 수당으로 지방의회 회기에 따라 지급하였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만들어졌으며 지급기준도 계속 변해옴
- 2005년 폐지 당시 회기수당의 평균 지급기준은 연평균 1,060만 원(시·도의회 1,320만 원, 시·군·구의회 800만 원)이었음. 2006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월정수당 산정공식에 재정력지수,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더미 등이 포함됨
- 2018년 월정수당 결정기준은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임. 결과적으로 현재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마다 지급기준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표 2-1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변화

연도 (개정)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제도	시·도의회 의원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1991~					일비	5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1994~					일비	6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995~	월 500,000원 이내	월 35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	회의수당	일 60,000원 이내	일 50,000원 이내
1999~	월 700,000원 이내	월 55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	회기수당	일 80,000원 이내	일 70,000원 이내
2003~	월 1,200,000원 이내	월 9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회기수당	상동	상동
200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월정수당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자율적으로 결정	
200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월정수당	산정방식 규정 재정력지수,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더미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201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월정수당	산정방식 규정 재정력지수,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더미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3) 의정비 제도 변천 종합

- 우리나라 의정비 제도의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첫째,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었음. 월정수당의 도입은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월정수당은 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명예직과 보수(수당)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즉,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면서 월정수당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2003년에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내용은 명예직을 규정할 때와 달라지지 않았고, 보수 성격이 강한 월정수당은 2006년에 도입됨
- 이와 관련하여 일비 → 회의수당 → 회기수당 → 월정수당으로 변화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비, 회의수당, 회기수당은 여비 성격이 강하지만 월정수당은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의 성격이 있음. 회기수당의 경우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음

[표 2-12] 일비, 회의수당, 회기수당, 월정수당 구분

구분	내용
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비는 여비에 해당함 · 회기 중에 한하여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일비는 여비 중의 하나로 1일 기준으로 책정하되,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함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회의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 변경 · 회기 중에 지급 ·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회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 ·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 회의참석에 따라 법정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함. 다만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월정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 · 직무급 성격

- 둘째,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였음. 월정수당 도입 초기에는 지급기준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월정수당과 지급기준을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
- 셋째, 의정활동비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율성이 부재하고, 사회경제적 흐름을 미 반영하고 있음. 의원의 의정활동 즉,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도입 이후 초기에는 지급액을 확대해 왔으나,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는 상황임

[표 2-13] 의정비 제도의 변천 종합

연도	주요 내용	지급내용 및 범위	지급 기준 규정
1949	· 명예직 규정	· 일비와 여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함
1988	· 명예직 규정 · 의원의 보수라는 표제 사용(제32조)	· 일비와 여비 · 회기 중에 한함	대통령령으로 정함
1989	· 명예직 규정 유지 ·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 더 자세히 규정	· 일비, 여비 · 일비는 회기중, 여비는 재정의회 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한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994	· 명예직 규정 유지 · '의원의 보수라는 표현 대신 '의정활동비 등' 으로 변경 · 의정활동비 신설 일비를 회의수당 으로 변경	·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 · 다만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는 시도의 회의원만 지급하도록 규정함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여 변경 후 회의수당은 일비와 지급범위와 기준이 동일함	상동
1999	· 명예직 규정 유지 · 회의수당제에서 회기수당제로 변경	·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는 이전 회의수당과 동일하게 일비개념으로, 1999.12.31.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인상함	상동
2003	· 명예직 규정 삭제 ·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를 시도의회의 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조항 삭제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에게는 보조활동비 지급	·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상동

연도	주요 내용	지급내용 및 범위	지급 기준 규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제(월정수당제) 도입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 ·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 월정수당 지급기준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종합 고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정방식 도입(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 · 지급기준을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의정비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거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 월정수당 산식에 따라 산출: 재정력지수, 의원1명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유형별 더미값(도시특성) 	상동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 결정절차 간소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동안 지급할 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생략 · 이에 따라 월정수당의 경우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가능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 월정수당 산식에 따라 산출: 재정력지수, 의원1명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유형별 더미값(도시특성) 	상동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 월정수당 고려항목: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실적 	상동

자료: 고경훈·김경훈(2019); 구본충·박이석(2014);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절 의정 지원제도 현황분석

1.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

1) 연도별 평균 의정비 변화

- 지방의회 의정비의 최근 10년 변화를 보면, 2013년 광역자치단체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평균은 5,372만 원, 기초자치단체 평균 3,510만 원, 전체 의정비 평균은 3,639만 원이었으며, 2022년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평균은 6,017만 원, 기초자치단체 평균 4,089만 원, 전체 의정비 평균은 4,443만 원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표 2-14] 연도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및 전년도 대비 인상률(최근 10년)

(단위: 만 원/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3,639(0.0)	3,649(0.3)	3,709(1.6)	4,107(1.5)	4,153(1.1)
광역(1인 평균)	5,372(0.0)	5,389(0.3)	5,450(1.2)	5,672(1.0)	5,709(0.7)
기초(1인 평균)	3,510(0.0)	3,519(0.3)	3,578(1.7)	3,767(1.7)	3,814(1.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4,195(1.0)	4,298(2.5)	4,342(1.0)	4,414(1.6)	4,443(0.7)
광역(1인 평균)	5,743(0.6)	5,837(1.6)	5,890(0.9)	5,982(1.5)	6,017(0.6)
기초(1인 평균)	3,858(1.2)	3,954(2.5)	3,996(1.1)	4,062(1.6)	4,089(0.7)

자료: 행정안전부, 2013년~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결과

- 2008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도입으로 2009년 의정비 인하를 제외하고 의정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의정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상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금액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최소 0.3~최대 1.6% 증가하여 2013년 5,372만 원에서 2022년 6,017만 원으로 10년간 12.0%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최소 0.3%~최대 2.5% 증가하여 2013년 3,510만 원에서 2022년 4,089만 원으로 16.5% 증가함

- 2022년 1월 기준 의정활동비는 총 평균 1,354만 원이며, 광역 1,800만 원, 기초 1,320만 원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 총액은 평균 4,443만 원이었으며, 광역의 경우에는 6,017만 원, 기초는 4,089만 원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의정활동비는 변하지 않고, 월정수당이 증가한 가운데,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의정비 총액의 0.7%가 인상되었고 광역의 경우 0.6%, 기초의 경우 0.7%가 인상되었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의정비 총액(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합)의 차이가 약 2,00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5]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및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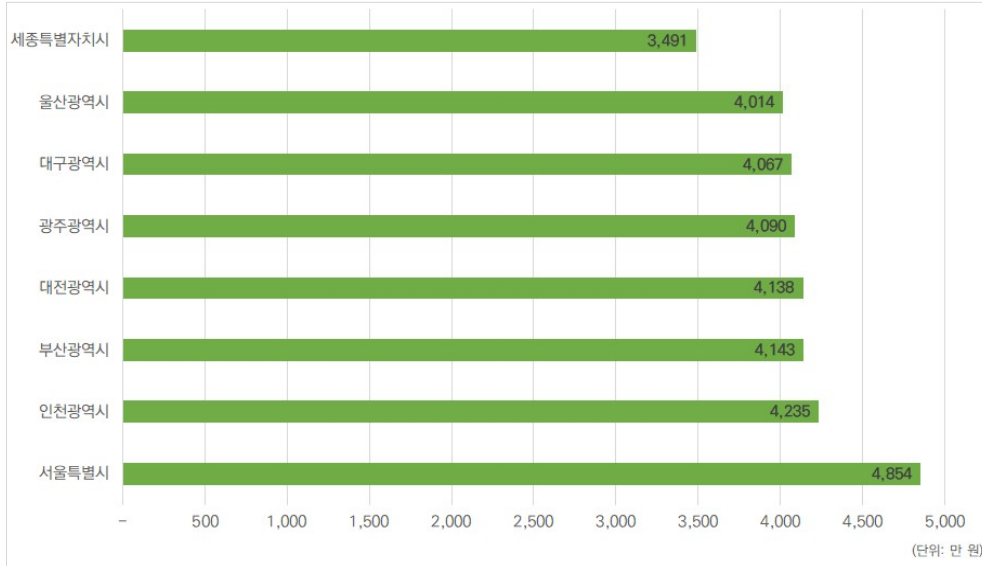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연간 금액)

구분	2021년도			2022년도(2022년 1월 기준)				
	결정액(조례)			결정액(조례)			전년대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A)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B)	금액(B-A)	인상률(%)
총평균	3,060	1,354	4,414	3,089	1,354	4,443	29	0.7
광역(평균)	4,182	1,800	5,982	4,217	1,800	6,017	35	0.6
기초(평균)	2,742	1,320	4,062	2,769	1,320	4,089	27	0.7

자료: 행정안전부(2022), 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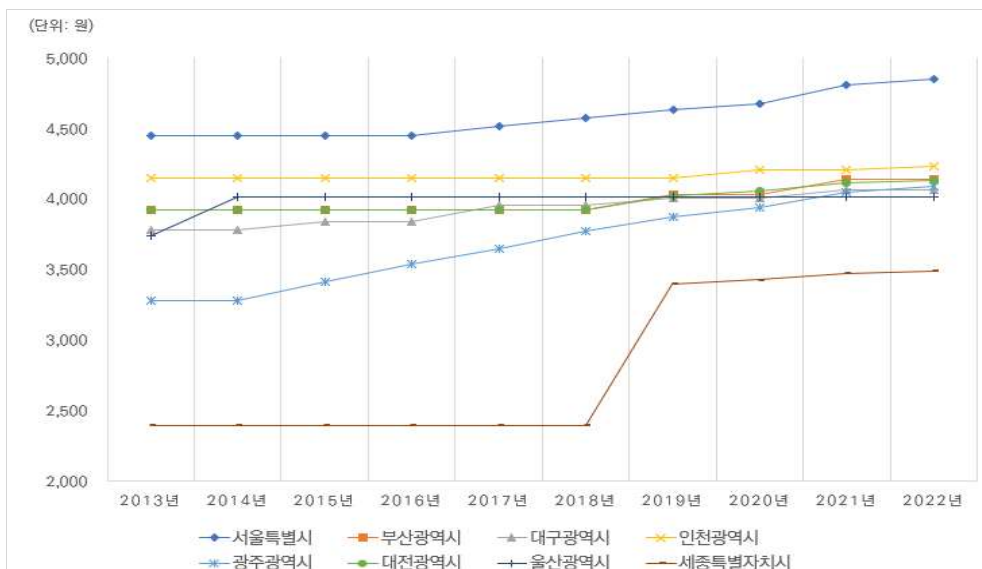
2) 주요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비교

- 2022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회가 4,854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4,235만 원, 부산 4,143만 원, 대전 4,138만 원, 광주 4,090만 원, 대구 4,067만 원, 울산 4,014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3,491만 원으로 가장 적음
- 매년 인상하거나 인상 후 동결, 동결 유지 후 인상 등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2-2] 2022년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월정수당 현황

○ 최근 10년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비교하면 [그림 2-3]과 같음



[그림 2-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최근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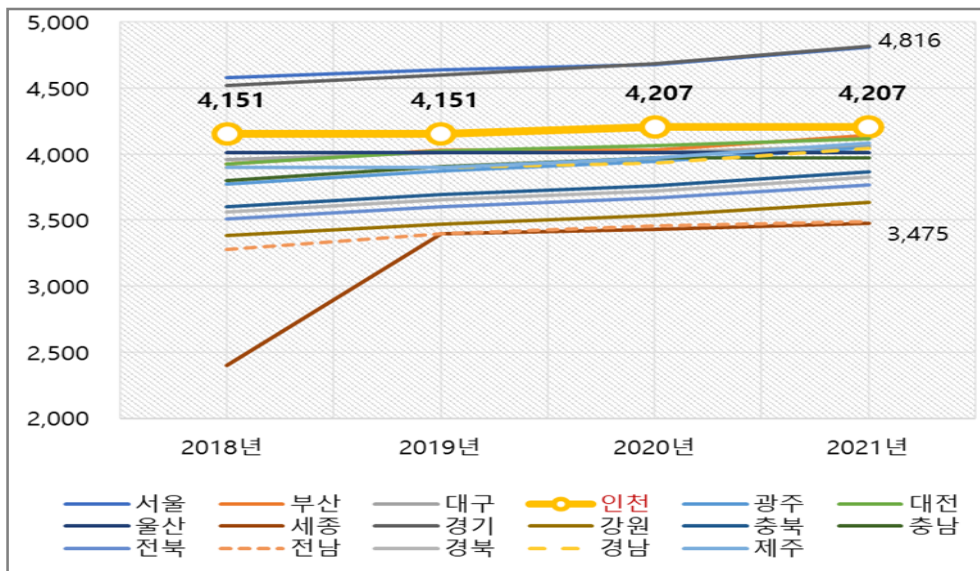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의회는 2019년까지 월정수당 인상 없이 동결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인상 후 2021년까지 동결하였으며,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였음. 울산광역시의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결 유지 중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경우 2018년까지 동결 유지하다가 2019년 전년 대비 41.5% 인상 후 매년 소폭 인상하고 있음

[표 2-16]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 월정수당 변화

(단위: 만 원, %)

구분	월정수당				순위				증가율(%)			
	'18년	'19년	'20년	'21년	'18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4년 변화율
서울	4,578	4,638	4,680	4,810	1	1	2	2	1.31	0.91	2.78	5.07
부산	3,928	4,030	4,030	4,143	6	4	5	4	2.60	-	2.80	5.47
대구	3,960	4,011	4,011	4,067	5	7	7	7	1.29	-	1.40	2.70
인천	4,151	4,151	4,207	4,207	3	3	3	3	-	1.35	-	1.35
광주	3,776	3,874	3,944	4,054	11	11	10	8	2.60	1.81	2.79	7.36
대전	3,924	4,026	4,063	4,120	7	5	4	5	2.60	0.92	1.40	4.99
울산	4,014	4,014	4,014	4,014	4	6	6	10	-	-	-	-
세종	2,400	3,397	3,428	3,475	17	17	17	17	41.54	0.91	1.37	44.79
경기	4,521	4,602	4,685	4,816	2	2	1	1	1.79	1.80	2.80	6.53
강원	3,384	3,472	3,534	3,633	15	15	15	15	2.60	1.79	2.80	7.36
충북	3,600	3,694	3,760	3,865	12	12	12	12	2.61	1.79	2.79	7.36
충남	3,803	3,905	3,974	3,974	10	8	8	11	2.68	1.77	-	4.50
전북	3,511	3,602	3,667	3,770	14	14	14	14	2.59	1.80	2.81	7.38
전남	3,280	3,398	3,459	3,490	16	16	16	16	3.60	1.80	0.90	6.40
경북	3,559	3,652	3,718	3,823	13	13	13	13	2.61	1.81	2.82	7.42
경남	3,899	3,899	3,934	4,044	9	10	11	9	-	0.90	2.80	3.72
제주	3,902	3,902	3,972	4,083	8	9	9	6	-	1.79	2.79	4.64

-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지만, 서울특별시와의 간격은 커지고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과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월정수당을 비교한 결과, 2021년 기준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4,816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3,475만 원임
-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가장 큰 변화율을 보이는 지역은 세종시로 4년간 44.79%가 증가하여 2018년 2,400만 원에서 2021년 3,475만 원으로 증가함. 이는 2018년 2,4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하여 2019년에 41.54% 인상하였기 때문임. 다음으로 광주, 강원, 충북, 경북이 7% 이상 증가함



[그림 2-4] 광역자치단체 월정수당 변화율 추이(2018년~2021년)

3) 주요 시도 의정비(월정수당) 결정내역

- 다음으로 8대(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 의정비(월정수당) 결정내역을 의정비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서울특별시는 2019년과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 2021년과 2022년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전부 적용하였음

[표 2-17] 서울특별시 의정비 결정내역(2018.11.27.): 제8대(지방의회 부활이후) 지방의원

연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비고
2019년	'18년도 월정수당에 '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1.3%)을 합산 금액	연 1,800만 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월정수당 인상: 년 45,780천 원(18) →46,375천 원('19, 총 595천 원)
2020년	'19년 월정수당에 '19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50%을 합산한 금액	연 1,800만 원		
2021년	'20년 월정수당에 '20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연 1,800만 원		
2022년	'21년 월정수당에 '21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연 1,800만 원		

자료: 서울특별시. 2018.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비 심의결과 보고,

- 경기도는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1.79% 인상한 4,602만 원으로 결정하고, 2020년과 2022년 모두 공무원보수 인상률 전부를 적용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의정비 결정내역을 보면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수, 재정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

[표 2-18] 경기도 의정비 결정내역(2018.12.14.): 제8대(지방의회 부활이후) 지방의원

연도	월정수당
2019년	· 연 46,020,000원
2020년	·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액 금액
2021년	·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액 금액
2022년	·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액 금액

자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19.1.14.개정)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 분석

1) 관련 규정

- 인천광역시는 의정비에 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2019년 2월 20일 개정에 의해 결정됨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19년에는 4,151만 원으로 2018년과 동결하고, 2020년에는 지방공무원의 인상률(2019년)의 70%를 합산한 금액인 4,207만 원, 2021년 4,207만 원 동결, 2022년에는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함

[표 2-19]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2.2.24.)	
제22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① 법 제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매월 120만 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30만 원	
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연도	지급액
2019년	· 연 4,151만 원
2020년	·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 (연 4,207만 원)
2021년	· 연 4,207만 원
2022년	·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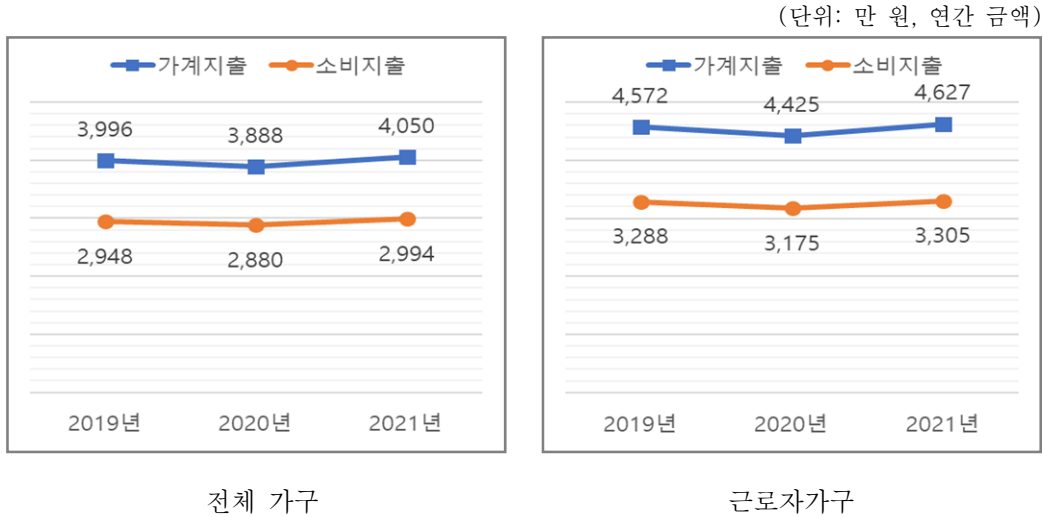
2) 인천광역시 의정비 변화 및 현황

- 2013년부터 2022년간 인천광역시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151만 원으로 동결하다가 2020년 1.35% 상승, 2021년 동결, 2022년 0.67% 상승함
- 2020년 1.35%, 2022년 0.67% 상승한 이유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수준에서 인천광역시 의정비를 인상하였기 때문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기준연도는 이전연도로 2019년과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각각 1.8%와 0.9%임
- 인천광역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0년간 의정비 인상률이 2.02%로 가장 낮은데, 이를 연평균으로 하면 0.202%에 해당함. 위의 [표 2-16]을 보더라도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월정수당 변화율이 가장 낮음.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 금액은 높은 수준이나 변화율이 매우 낮아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도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그림 2-5] 인천광역시 10년간 월정수당 변화

- 한편 인천시의회의 의정비는 근로자가구 가구당 가계지출(2021년 4,627만 원)보다도 낮음. 이는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으로는 근로자가구 수준의 지출을 할 수 없어 근로자가구보다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는 의미임



[그림 2-6] 가구당 가계지출

3. 월정수당 결정요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월정수당 주요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월정수당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인천광역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주민 수

- 8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2021년 기준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서울특별시가 86,450명, 인천광역시 79,686명, 대구광역시 79,514명, 부산광역시 71,285명, 대전광역시 66,012명, 광주광역시 62,679명, 울산광역시 50,982명, 세종특별자치시 20,661명 임
- 2012년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소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2012년 의원 1인당 인구수 86,182명에서 2021년 79,6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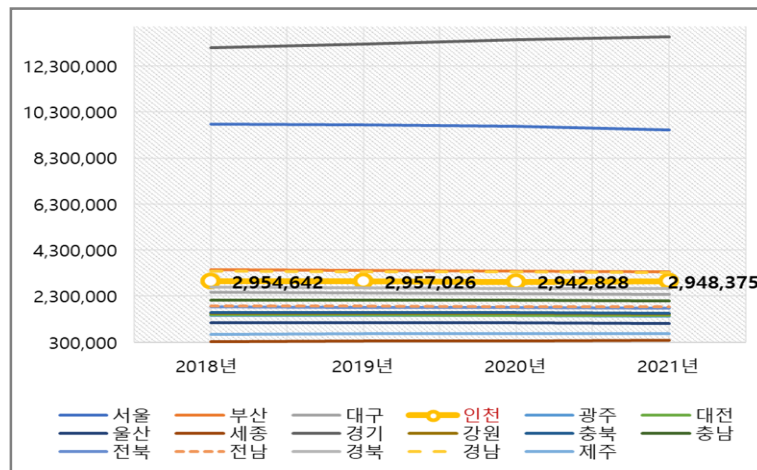
으로 2012년 대비 7.54% 감소함.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의원 1인에 대한 대표성과 함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을수록 의원이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표 2-20]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추이 (단위: 명, %)

자치단체	2012년			2021년			의원 1인당 인구수 증감률
	인구수	의원 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인구수	의원 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서울특별시	10,195,318	106	96,183	9,509,458	110	86,450	△10.12
부산광역시	3,538,484	47	75,287	3,350,380	47	71,285	△5.32
대구광역시	2,505,644	29	86,402	2,385,412	30	79,514	△7.97
인천광역시	2,843,981	33	86,182	2,948,375	37	79,686	△7.54
광주광역시	1,469,216	22	66,783	1,441,611	23	62,679	△6.15
대전광역시	1,524,583	22	69,300	1,452,251	22	66,012	△4.74
울산광역시	1,147,256	22	52,148	1,121,592	22	50,982	△2.24
세종특별자치시	113,117	15	7,542	371,895	18	20,661	173.95

주: 제5회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정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연말기준,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외국인 제외

[그림 2-7] 주민등록인구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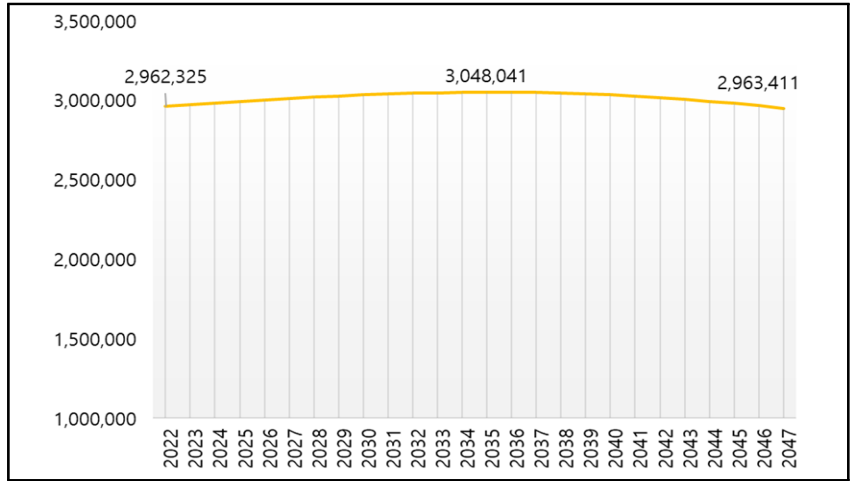
-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최근 4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는 2018년 대비 2021년 감소함. 2021년 인천, 세종,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단위 인구는 2020년 대비 감소함
-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하던 것이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21년 기준으로는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광역시로서의 의미가 있음

[표 2-21] 광역자치단체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순위				증가율			
	'18년	'19년	'20년	'21년	'18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4년 변화율
서울	9,765,623	9,729,107	9,668,465	9,509,458	2	2	2	2	-0.4	-0.6	-1.6	-2.6
부산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3	3	3	3	-0.8	-0.6	-1.2	-2.6
대구	2,461,769	2,438,031	2,418,346	2,385,412	7	7	7	7	-1.0	-0.8	-1.4	-3.1
인천	2,954,642	2,957,026	2,942,828	2,948,375	5	5	5	5	0.1	-0.5	0.2	-0.2
광주	1,459,336	1,456,468	1,450,062	1,441,611	14	14	14	14	-0.2	-0.4	-0.6	-1.2
대전	1,489,936	1,474,870	1,463,882	1,452,251	13	13	13	13	-1.0	-0.7	-0.8	-2.5
울산	1,155,623	1,148,019	1,136,017	1,121,592	15	15	15	15	-0.7	-1.0	-1.3	-2.9
세종	314,126	340,575	355,831	371,895	17	17	17	17	8.4	4.5	4.5	18.4
경기	13,077,153	13,239,666	13,427,014	13,565,450	1	1	1	1	1.2	1.4	1.0	3.7
강원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12	12	12	12	-0.1	0.1	-0.3	-0.3
충북	1,599,252	1,600,007	1,600,837	1,597,427	11	11	11	11	0.0	0.1	-0.2	-0.1
충남	2,126,282	2,123,709	2,121,029	2,119,257	8	8	8	8	-0.1	-0.1	-0.1	-0.3
전북	1,836,832	1,818,917	1,804,104	1,786,855	10	10	10	10	-1.0	-0.8	-1.0	-2.7
전남	1,882,970	1,868,745	1,851,549	1,832,803	9	9	9	9	-0.8	-0.9	-1.0	-2.7
경북	2,676,831	2,665,836	2,639,422	2,626,609	6	6	6	6	-0.4	-1.0	-0.5	-1.9
경남	3,373,988	3,362,553	3,340,216	3,314,183	4	4	4	4	-0.3	-0.7	-0.8	-1.8
제주	667,191	670,989	674,635	676,759	16	16	16	16	0.6	0.5	0.3	1.4

- 인구추계 결과 인천광역시는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 2-8] 인천광역시 인구추계

2) 재정능력

- 당초예산 기준 8개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대구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2014년 대비 2022년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²⁾.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정도가 낮다는 의미로, 역으로 재정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4년 62.6%에서 2022년 52.8%로 9년간 재정자립도가 거의 10% 감소하였음
- 최근 4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자립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함.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인천이고, 그 외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임.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나타낸 것임

[표 2-22] 광역자치단체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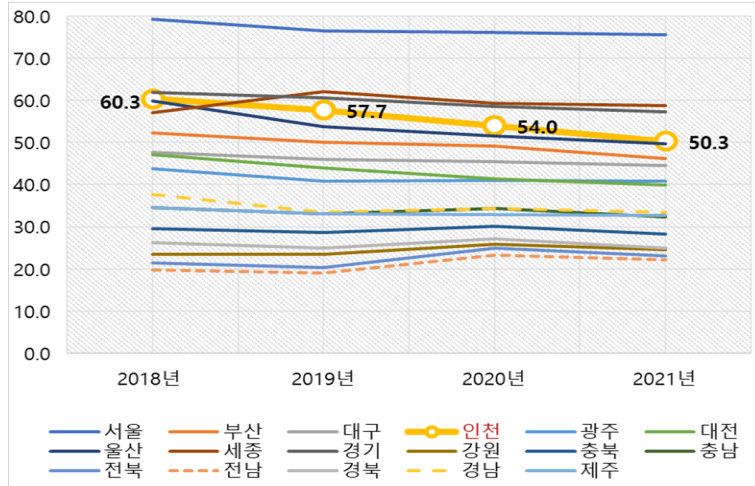
자치단체	2014년	2018년	2022년
서울특별시	80.0	79.2	76.3
부산광역시	51.4	52.4	46.9
대구광역시	46.1	47.6	47.9
인천광역시	62.6	60.3	52.8
광주광역시	41.9	43.8	41.1
대전광역시	49.4	47.1	42.4
울산광역시	61.4	59.9	48.7
세종특별자치시	47.4	57.1	56.9

주: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예산, 당초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순위는 높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4년간 변화율이 -16.6%로 울산(-17.2%) 다음으로 많이 하락함

[표 2-23]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1년) (단위: %)

구분	재정자립도				순위				증가율			
	'18년	'19년	'20년	'21년	'18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4년 변화율
서울	79.2	76.5	76.1	75.6	1	1	1	1	-3.4	-0.5	-0.7	-4.5
부산	52.3	50.0	49.2	46.1	6	6	6	6	-4.4	-1.6	-6.3	-11.9
대구	47.6	45.9	45.4	44.6	7	7	7	7	-3.6	-1.1	-1.8	-6.3
인천	60.3	57.7	54.0	50.3	3	4	4	4	-4.3	-6.4	-6.9	-16.6
광주	43.8	40.8	41.1	40.8	9	9	9	8	-6.8	0.7	-0.7	-6.8
대전	47.1	43.9	41.4	39.9	8	8	8	9	-6.8	-5.7	-3.6	-15.3
울산	59.9	53.7	51.6	49.6	4	5	5	5	-10.4	-3.9	-3.9	-17.2
세종	57.1	62.1	59.3	58.8	5	2	2	2	8.8	-4.5	-0.8	3.0
경기	61.9	60.5	58.6	57.3	2	3	3	3	-2.3	-3.1	-2.2	-7.4
강원	23.5	23.5	25.8	24.5	15	15	15	15	0	9.8	-5.0	4.3
충북	29.6	28.7	30.1	28.3	13	13	13	13	-3.0	4.9	-6.0	-4.4
충남	34.5	33.0	34.4	32.3	11	11	10	12	-4.3	4.2	-6.1	-6.4
전북	21.5	20.4	24.9	23.1	16	16	16	16	-5.1	22.1	-7.2	7.4
전남	19.8	19.1	23.3	22.2	17	17	17	17	-3.5	22.0	-4.7	12.1
경북	26.2	24.9	27.1	24.9	14	14	14	14	-5.0	8.8	-8.1	-5.0
경남	37.7	33.4	34.3	33.5	10	10	11	10	-11.4	2.7	-2.3	-11.1
제주	34.5	33.0	32.9	32.7	11	11	12	11	-4.3	-0.3	-0.6	-5.2



[그림 2-9] 재정자립도 변화율 추이

3)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최소 0.9%에서 최대 3.8%까지 편차가 있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대비 낮는데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2012년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7%이던 것이 2020년에는 90.5%까지 근접함

[표 2-24]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추이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7	84.5	84.3	83.4	83.2
보수인상률	3.5	2.8	1.7	3.8	3.0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6.0	85.2	86.1	90.5	-
보수인상률	3.5	2.6	1.8	2.8	0.9

주1: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산출(매년 6월 보수 기준)

주2: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사무관리직의 보수를 비교대상 민간임금으로 함

자료: 인사혁신처,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결과

4)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기능에 따라 입법 기능, 의결 기능, 통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능에 따른 평가 지표를 다음의 [표 2-25]와 같이 설정함

[표 2-25]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

의회 기능	의정활동	의정활동 평가 지표
입법 기능	· 조례 제·개정 활동	· 조례안 처리 건수 · 의원 발의 비율
의결 기능	· 심의·의결 활동	·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건수 · 동의(승인)안 처리 건수 · 건의·결의안 처리 건수
통제 기능	· 행정감시 활동	· 행정사무감사 지적수 · 예·결산안 처리 건수

-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와 관련 지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건수는 아래의 8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발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26] 연도별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발의 건수(조례)
(단위: 건)

자치단체	제6기 지방의회			제7기 지방의회				제8기 지방의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특별시	124	106	91	193	208	243	176	342	297	344
부산광역시	46	44	38	67	101	108	57	115	111	185
대구광역시	91	20	43	53	24	78	52	97	88	98
인천광역시	72	62	47	82	71	137	69	178	119	127
광주광역시	81	55	28	79	53	118	40	121	164	136
대전광역시	37	59	30	88	72	124	30	92	63	118
울산광역시	13	33	14	16	21	29	33	123	161	165
세종특별자치시	30	60	70	47	65	52	21	103	85	145

주: 의원 발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건수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인천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증가했지만 타 광역 의회의 증가 폭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산, 세종, 경남의 경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2020년에는 인천보다 적었다가 2021년 인천보다 많음

[표 2-27] 광역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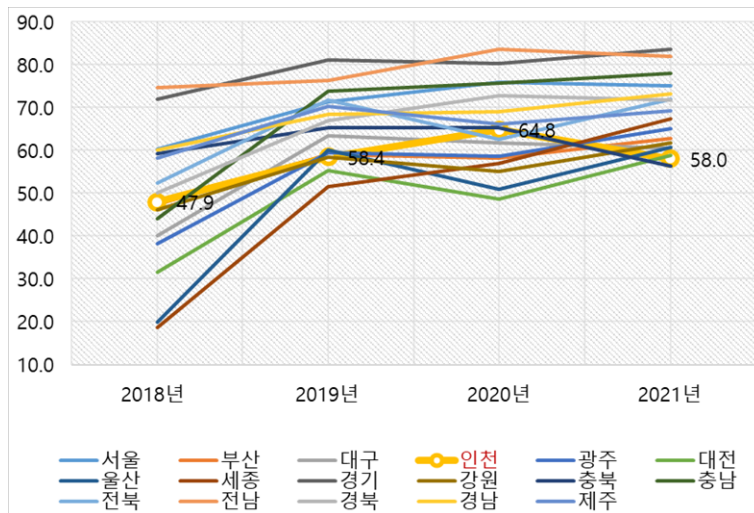
구분	의원수	조례제개정건수(전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110	176	342	297	344
부산	47	57	115	111	185
대구	30	52	97	88	98
인천	37	69	178	119	127
광주	23	40	121	164	136
대전	22	30	92	63	118
울산	22	33	123	161	165
세종	18	21	103	85	145
경기	142	165	276	304	295
강원	46	36	85	71	96
충북	32	51	68	74	101
충남	42	37	153	156	216
전북	39	39	71	104	119
전남	58	134	122	129	294
경북	60	47	79	102	120
경남	58	50	114	102	207
제주	43	102	150	189	173
계	829	1,139	2,289	2,319	2,939

- 인천시의회 의원발의비율은 2020년 보다 2021년 감소하였으며, 전체 건수도 타 광역의 회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임. 의원발의비율은 전체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비율로, 지방의회마다 변동 폭이 크며, 지역마다 조례안처리건수 산출방식이 달라 지역 간 비교가 어려움

[표 2-28] 의원발의비율

(단위: %)

구분	의원발의비율				순위				증가율			
	'18년	'19년	'20년	'21년	'18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4년 변화율
서울	60.2	71.3	75.9	75.0	3	5	3	4	18.4	6.5	-1.2	24.6
부산	47.4	59.1	58.2	62.8	10	13	13	11	24.7	-1.5	7.9	32.5
대구	40.0	63.4	61.8	60.4	13	10	11	14	58.5	-2.5	-2.3	51.0
인천	47.9	58.4	64.8	58.0	9	14	9	16	21.9	11.0	-10.5	21.1
광주	38.1	59.5	58.6	65.1	14	12	12	10	56.2	-1.5	11.1	70.9
대전	31.6	55.2	48.7	58.8	15	16	17	15	74.7	-11.8	20.7	86.1
울산	19.9	60.0	50.8	60.7	16	11	16	13	201.5	-15.3	19.5	205.0
세종	18.6	51.6	57.0	67.4	17	17	14	9	177.4	10.5	18.2	262.4
경기	71.9	81.0	80.2	83.5	2	1	2	1	12.7	-1.0	4.1	16.1
강원	46.2	58.4	55.0	61.7	11	14	15	12	26.4	-5.8	12.2	33.5
충북	59.2	65.2	65.2	56.4	5	9	8	17	10.1		-13.5	-4.7
충남	44.1	73.8	75.7	77.9	12	3	4	3	67.3	2.6	2.9	76.6
전북	52.3	71.6	62.6	71.9	7	4	10	6	36.9	-12.6	14.9	37.5
전남	74.7	76.3	83.5	81.8	1	2	1	2	2.1	9.4	-2.0	9.5
경북	50.0	66.9	72.8	71.7	8	8	5	7	33.8	8.8	-1.5	43.4
경남	60.0	68.3	69.0	73.1	4	7	6	5	13.8	1.0	5.9	21.8
제주	58.1	70.2	66.0	69.1	6	6	7	8	20.8	-6.0	4.7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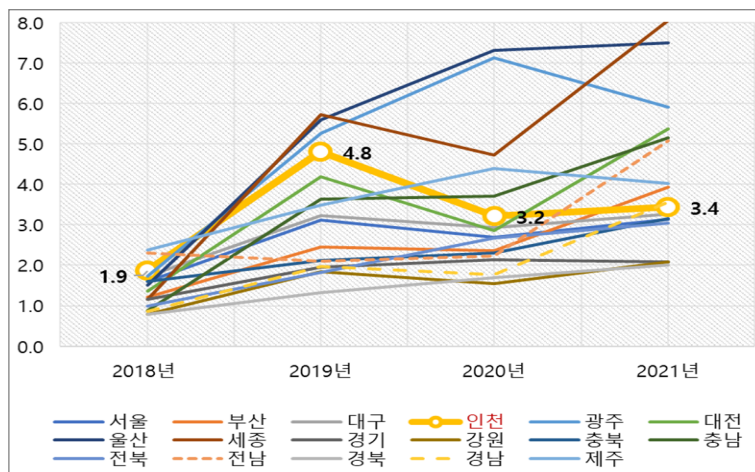
[그림 2-10] 의원발의비율 변화율 추이

- 의정활동실적 중 의원 1인당 의원발의 조례제·개정수를 보면 인천시의회는 2018년 대비 2019년 대폭 증가했다가 2020년 감소하고, 2021년 다시 증가함. 그러나 타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순위는 계속 하락함

[표 2-29] 의원1인당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

(단위: 건/인, %)

구분	의원1인당 의원발의조례제·개정수				순위				증가율			
	'18년	'19년	'20년	'21년	'18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4년 변화율
서울	1.6	3.1	2.7	3.1	6	9	9	13	94.3	-13.2	15.8	95.5
부산	1.2	2.4	2.4	3.9	10	10	11	8	101.8	-3.5	66.7	224.6
대구	1.7	3.2	2.9	3.3	5	8	7	11	86.5	-9.3	11.4	88.5
인천	1.9	4.8	3.2	3.4	3	4	6	10	158.0	-33.1	6.7	84.1
광주	1.7	5.3	7.1	5.9	4	3	2	3	202.5	35.5	-17.1	240.0
대전	1.4	4.2	2.9	5.4	9	5	8	4	206.7	-31.5	87.3	293.3
울산	1.5	5.6	7.3	7.5	8	2	1	2	272.7	30.9	2.5	400.0
세종	1.2	5.7	4.7	8.1	11	1	3	1	390.5	-17.5	70.6	590.5
경기	1.2	1.9	2.1	2.1	12	14	14	16	67.3	10.1	-3.0	78.8
강원	0.8	1.8	1.5	2.1	17	15	17	15	136.1	-16.5	35.2	166.7
충북	1.6	2.1	2.3	3.2	7	11	12	12	33.3	8.8	36.5	98.0
충남	0.9	3.6	3.7	5.1	14	6	5	5	313.5	2.0	38.5	483.8
전북	1.0	1.8	2.7	3.1	13	16	10	14	82.1	46.5	14.4	205.1
전남	2.3	2.1	2.2	5.1	2	12	13	6	-9.0	5.7	127.9	119.4
경북	0.8	1.3	1.7	2.0	16	17	16	17	68.1	29.1	17.6	155.3
경남	0.9	2.0	1.8	3.6	15	13	15	9	128.0	-10.5	102.9	314.0
제주	2.4	3.5	4.4	4.0	1	7	4	7	47.1	26.0	-8.5	69.6



[그림 2-11] 의원1인당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건수

제3장 해외 주요 의정활동 지원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6절 해외사례 분석 종합

제3장 해외 주요 의정활동 지원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 미국의 경우 주 정부마다 주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및 겸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주 정부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활용하여 지방의원의 보수를 국가 단위의 기준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방의원의 보수체계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큰 것에서 기인함
- 카운티(county)나 시티(city), 타운십(township) 등의 경우 주 헌법, 법률에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에서 지방의원은 평범한 시민이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본인의 직업을 유지한 가운데 회기 중에만 의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겸직제도에 대해 다소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만,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의원으로서의 윤리규범에 따라 공직이해와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함

1. 주 의회의원

- 주마다 독립적으로 의회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여 각자 다른 방법의 보수형태를 지님. 미국의 50개 주 대부분의 주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지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도 주마다, 상하원에 따라 다름
- 미국 각 주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보수는 각 주 규정에 의해 지급되며 주마다 큰 차이가 있음. 뉴욕주의 경우 63명의 상원의원과 150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며 각각 임기는 2년씩임

- 텍사스주의 경우 31명의 상원의원과 150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며 상원의원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임. 2022년 현재 하원의원들의 평균연봉은 45,340(약 5800만 원)달러 정도이며, 8년 이상 근무할 경우 60세 이후 연금이 지급됨
- 보통 주에서는 일정수준의 연봉 이외에 매월 직무수당 (판공비)를 지급하며, 회기 때 출석일 수에 따라 일당 (교통비 및 숙박비 명목)도 지급하고 있어 1년을 합산하면 5만-10만 불 가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음
-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원내대표 등의 경우 추가 직무수당을 지급 받기는 하지만 이들이 원래 직업에서 벌던 금액에 비하면 매우 소수이며, 실제로 임기 중에도 변호사 등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보수 결정 주기는 주마다 다름. 뉴멕시코주의 경우 2년마다 결정하고(일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매년 시민보상위원회에서 의원의 연봉을 논의함

1) 보수현황

- 주 별로 입법부에 할애하는 업무시간에 따라 Full-time의회, Hybrid의회, Part-time의 회로 구분됨.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시간을 입법부에 활용하는 Full-time의회 의원들의 평균 보수가 Part-time의회 의원보다 높게 나타남
- Full-time으로 의원을 고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미시간, 뉴욕 등 10개 주 정도이며, 이들 주 의회위원의 평균연봉은 약 \$82,358(한화로 약 1억 600만 원)인 반면, 텍사스,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 28개 주는 Hybrid형태를 띠며 평균연봉은 약 절반 정도인 \$41,110로 조사됨
- 주의회의원이 주로 Part-time으로 직무를 맡는 주인 아이다호, 유타, 뉴멕시코 주 등의 경우에는 평균연봉이 약 \$18,449(한화로 약 2400만 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상위 5개의 주(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매사추세츠)의회 의원은 모두 Full-time의회 의원으로, 의회에 상주하는 시간이 길수록 보수가 높음

2) 보수 지급 형태

- 주의원의 보수는 주별로 일급, 주급, 연봉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급함.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봉과 회의 시 일비(per diem)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일급이나 주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함
- 뉴멕시코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무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명예직이나, 회의 참석시마다 일비를 지급하고 있고, 10년 근속 시 연금을 지급함

[표 3-1] 미국 주의회 의원 보수 형태

구분		해당주	채택 주수
명예직 + Per diem		New Mexico	1
일급 + Per diem		Alabama, Kansas, Kentucky, Montana, Nevada, North Dakota, Utah, Wyoming	8
주급 + Per diem		Vermont(\$604.79/주)	1
연봉	Per diem	New Hampshire(\$200/2year), California(\$95,291/year), Georgia(\$17,342/year), New York(\$79,500/year), Texas(\$7,200/year)	37
	No per diem	Connecticut(\$28,000/year), New Jersey(\$49,000/year), Ohio(\$60,584/year)	3

자료: 고경훈·김건위(2019)

2. 지방의회 의원

-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과 의회-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으로 나누어지며, 뉴욕시나 달라스시와 같은 대규모 시정부의 경우 주로 시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장-의회형(강시장-총괄행정관형 정부) 형태를 따르고, 카운티 정부나 소규모 시정부 의회는 주로 의회-지배인형이나 위원회형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미국 주의회는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각 주 및 지방의 헌장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되며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소규모 시정부의 경우 시의원에게 월 \$400-500 정도의 명예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LA나 뉴욕등 대규모 정부의 경우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고, 이외에도 수명의 보좌관 채용비용은 물론 주어진 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사무실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뉴욕시 하원의원의 연봉은 \$57,840(약 7400만 원)에서 \$506,842(약 6억 5000만 원)에 걸쳐 있으면 중앙값은 약 \$183,961(2억 4000만 원)임. 2021년 기준 달라스시 의회의원 (council member)의 평균 연봉은 약 6만 달러(7700만 원)정도임
- 뉴욕, LA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지방의원 보수 수준이 매우 높으나, 인구 규모가 작은 타운 등의 경우에는 무보수 또는 실비보상 수준을 지급함(고경훈, 2019)

[표 3-2] 미국 텍사스주와 달라스시의 연봉에 관한 조항 및 정보

텍사스주 주의회의원 연봉에 관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의 보수에 대한 조항을 법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는 주나 지방의회도 있는 반면, 특별한 조항이 없이 개별의원마다 연봉계약을 맺는 주나 지방의회도 있음 · 텍사스 주의회의 경우 주 헌법 3조 24항에서 회기 기간 중 의원의 보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876년 2월 15일 제정, 1991년 11월 5일까지 총 5번 개정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의회 의원은 회기 기간동안 매달 600불 이상의 봉급을 공적 재정에서 수령하며 텍사스 윤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주민들의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로 정기회기나 특별회기동안 텍사스 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출장비를 받을 수 있음 ② 한 번의 회기는 140일 이상 열릴 수 없음 ③ 주 하원의원들은 출장비 이외에 텍사스 주 공무원법에 규정에 따른 거마비를 받을 수 있음
달라스시 시의원 연봉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라스시의 경우 시의원의 연봉은 2021년까지 약 37,500달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조례를 변경하여 6만 달러로 인상하였음 · 이때 연봉 조정의 근거로 명시한 것이 “달라스시 공무원의 평균연봉에 준하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달라스 공무원 평균 기본급이 약 59,984달러였기 때문에 6만 불로 인상하였음 · 이외에도 달라스 지역의 생활물가, 달라스 주민의 중위소득 등도 동시에 고려하였음

[표 3-3] 미국 뉴욕주와 뉴욕시의 연봉에 관한 조항 및 정보

뉴욕주 주의회의원 연봉에 관한 조항

- 뉴욕주 주의회의 경우 주 조례 S5598B를 통해 주 의회의원을 포함한 주 공무원과 지원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정보는 물론 보수 및 각종 복지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이 조문의 목적은 주의회 의원 보수 및 편익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의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보수와 관련된 체계적인 불평등 및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뉴욕시 시의원 연봉에 관한 정보

- 뉴욕시도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연봉책정 근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욕시 시의원을 포함한 시공무원들의 연봉에 대한 통계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 공지함으로써 뉴욕시 의회 보수지급정책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확보, 공지하고 있음

자료: <https://council.nyc.gov/data/pay-equity>

제2절 영국

1. 수당 현황

- 영국은 원래 지방의원이 순수 명예직이었으나, 1991년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함. 영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겸직이 허용되며, 급여 이외의 외부소득에 제한은 없으나 경제적인 사항을 의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함
- 명예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의원활동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됨. 수당은 기본수당, 참석수당(회의수당), 특별책임수당(기관운영비)으로 구분됨. 평의원 외에 의장, 고위간부, 원내대표 등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음

[표 3-4] 영국 의회 의원 수당

수당	내용
기본수당	· 의원의 자격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당
특별 책임 수당 (기관운영비)	· 의장 또는 위원회장 등 특별 보직을 맡은 의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
여행 및 생활 수당	· 늦은 회의 이후 여행, 장애 의원의 여행, 자전거 수당, 자치구 이외 여행 경비 수당

자료 : <https://minutes3.belfastcity.gov.uk>

- 그 외에 영국의회에서는 시의원이 봉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간경비 수당, 간병인 수당, IT 및 통신수당, 우편수당,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지급함

2. 수당 지급 기준

- 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군(county), 대도시권(district), 비대도시권, 런던구, 단일자치단체, 전인 그랜트 등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함. 수당은 의회에서 결정되지만, 그 기준은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

- 수당의 수준을 정할 때,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직무 규모에 따라 순위를 지정하여 역할 간의 직접 비교를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출석수당은 관련 규정상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여행경비와 생활수당은 환경성장관이 정한 지급률 범위 내에서 의회가 결정함(고경훈, 2012)
- 매년 5월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보수가 결정되지만, 해당 연도의 재정 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반영하고, 도시 별로 보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표 3-5] 영국 도시 별 2018-2019 연봉 현황

도시	인구 수	2018-2019 연봉
Mid Ulster (North Ireland)	약 15만 명	£ 14,775(약 2,339만 원)
East Lothian (Scotland)	약 10만 명	£ 16,994(약 2,690만 원)
Neath Port Talbot (Wales)	약 14만 명	£ 13,600(2,153만 원)
Manchester (England)	약 55만 명	£ 16,926(2,693만 원)

자료: https://www.taxpayersalliance.com/councillors_allowances_2020

3. 지역별 사례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Pay policy and practice in local authorities A guide for councillors 에 따르면 지역마다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런던 Haringey 자치구의 경우 성과 관련 급여 모델을 활용하고 있음
 -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과 향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함
 - 급여 수준을 8개의 범주로 나누고,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목표 미달·목표 달성·목표 초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이에 따라 보수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임
 - 의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실시되었음

- 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지역에서는 시의원들에게 급여 이외에 다양한 제휴 혜택을 통해서 시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
 - 브랜드 매장의 할인제도
 - 병원, 치과 및 의료기관 제휴
 - 안경점 등의 생활용품점 제휴
 - 직원을 위한 신용 조합 및 재정 교육에 관한 기관 제휴

제3절 독일

1. 보수 현황

- 독일 연방의회는 2014년 7월 제30차 독일 연방의회 의원법 개정을 통해 의원 보수에 대한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에서 2014년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입법부 자체 결정’이었지만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입법 모델을 채택하였음
- 독일 기본법은 연방의회 의원이 자신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독일 기본법 제48조 제3항). 의원 보수 수준은 의원 직위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에 비례해야 하고, 헌법 체계에서 의원에 부여된 순위도 고려해야 함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의원 보수액 결정과 관련해 헌법체계에서 의원직의 위치, 의원직의 부담, 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원 재직기간 동안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함. 연방의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겸직활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고 있고(독일 기본법 제48조 제2항), 겸직으로 인해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함

2. 보수지급 기준

- 연방의회의원 보수는 의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보수 수준은 연방대법원 법관 수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연방통계청장이 연방의회 의장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하는 명목임금지수를 반영해 매년 7월 1일에 보수 수준을 조정함

[표 3-6] 독일 의회 의원 보수 기준

구분	내용
보수 수준	· 연방 대법원 법관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함
보수 결정 기준	· 명목임금지수를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함
보수 결정 주기	· 매년 7월 1일에 의회위원의 보수를 조정함

3. 수당 종류

- 연방의회의원은 의원직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수당과 현물급부를 포함한 직무경비를 수령함(의원법 제12조 제1항). 매월 일시불로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의회 의원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표 3-7] 독일 의회 의원 각종수당

구분	내용
사무실 이용 및 관리 수당	· 연방의회 소재지 외부에 위치한 선거구 사무실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사무실 비용(임대료, 부대비용, 집기, 사무용품, 미디어, 출판물, 우편 요금 등)
여행 수당	· 연방의회 소재지 숙박비·식사비·출장비 및 직무상 해외여행을 제외한 여행에서 발생한 초과 소모비용
교통 수당	· 제16조(교통비용상환) 및 제17조(직무상여행)에 따라 별도로 상환되지 않는 독일 내에서 의원직 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
품위유지 및 관리 수당	· 그 밖의 의원직 수행과 관련된 비용(품위유지, 선거구 관리 등)으로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상 소득으로부터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비용

- 그 외에 현물급부, 직원고용비용, 교통비용 및 출장비용 상환, 사무기기 구입비 등을 법을 통해 지정하여 지원함(주성훈, 2021; 이부하, 2017)

[표 3-8] 독일 주 별 인구수 및 연봉(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평균 총 급여)

주	인구수	연봉
Schleswig-Holstein	289.7만	49.143 €(약 6600만 원)
Bremen	56.94만	53.537 €(약 7200만 원)
Niedersachsen	798.2만	51.165 €(약 6800만 원)
Nordrhein-Westfalen	1793만	56.262 €(약 7500만 원)
Hessen	626.6만	60.013 €(약 8000만 원)
Saarland	99.05만	53.076 €(약 7100만 원)
Rheinland-Pfalz	408.5만	54.592 €(약 7300만 원)
Baden-Württemberg	1107만	60.029 €(약 8000만 원)
Hamburg	184.1만	58.862 €(약 7900만 원)
Mecklenburg-Vorpommern	161만	42.749 €(약 5700만 원)
Brandenburg	7.212만	44.388 €(약 5900만 원)
Berlin	364.5만	52.566 €(약 7000만 원)
Sachsen-Anhalt	220.8만	44.173 €(약 5900만 원)
Sachsen	407.8만	44.897 €(약 6000만 원)
Thüringen	214.3만	45.352 €(약 6100만 원)
Bayern	1308만	58.270 €(약 7800만 원)

자료: <https://www.gehalt.de/beruf/stadtrat>

제4절 프랑스

1. 보수 현황

- 프랑스의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매달 일정액의 연구비, 회기 중에는 숙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되며, 이밖에 직무에 필요한 경비는 따로 지급받을 수가 있음. 수당은 기본수당, 주거수당, 직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보수 결정기준

- 직무수당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지급되며 수당의 액수는 공무원의 보수표를 참작하여 시행령으로 결정하고,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증액을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의 임금을 재조정 할 때마다 의원의 수당도 자동으로 조정됨
- 의장과 부의장 간 직무수당은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인구 규모가 직무수당을 책정하는 고려요소로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증액됨
 - 직무수당은 인구 250,000명 미만, 250,000명에서 500,000명, 500,000명에서 1,000,000명, 1,000,000명에서 1,250,000명, 1,250,000명 이상의 다섯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결정됨
- 인구 10만 명 미만의 지역의 시의원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시의회에서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음. 인구 25만 명 미만은 공무원 보수 증가율의 40%를 반영하며 인구 125만 명 이상은 공무원 보수 증가율의 70%를 반영함. 이처럼 인구 규모에 따라 공무원 보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됨

[표 3-9] 프랑스 의원 수당 공무원 보수 반영 비율

인구 규모	공무원 보수 반영 최대 비율
25만 명 미만	40%
2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50%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60%
100만 명 이상 125만 명 미만	65%
125만 명 이상	70%

자료: <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

- 인구 규모에 따라 프랑스 의원의 실제 연봉을 살펴보면 인구 25만 명 미만인 지역 의원의 연봉은 한화로 약 2천 5백 만 원이고, 인구 125만 명 이상인 지역의원의 연봉은 4천 3백 만 원임

[표 3-10] 2019년도 프랑스 의원 월간 수당 현황

인구 규모	월간 수당액
25만 명 미만	1,555.76€(약 210만 원)
2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1,944.70€(약 261만 원)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2,333.64€(약 314만 원)
100만 명 이상 125만 명 미만	2,528.11€(약 340만 원)
125만 명 이상	2,722.58€(약 366만 원)

자료: <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institutions/le-regime-indemnitaire-des-elus>

- 지방의원의 월간 수당액은 소속위원회 본회의 및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음
- 프랑스 의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며, 겸직 수당의 합계는 기본 수당의 150%를 넘을 수 없음

3. 수당 종류

- 그 밖에 일반의원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음(고경훈, 2012)
 - 교통경비 및 여비수당
 - 운영 및 수행경비
 - 사무실 및 통신수당
 - 보좌진 고용수당
 - 퇴직수당

제5절 일본

1. 보수 현황

- 일본의 1888년 시제(市制), 정촌제(町村制)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며’라고 규정하였는데, 1947년 「지방자치법」에서 명예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의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의무로 하여 유급제를 채택함(김선기·김권일, 2020; 허전, 2017)
- 그리고 2008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제203조에 의원보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룸(허전, 2017). 즉, 지방공공단체의 사무가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지방 의원은 온종일 조사활동이나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직책으로 일종의 전문직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보수도 생활급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변함(김선기·김권일, 2020; 김희곤, 2006)

[표 3-11] 일본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재정적 지원 규정

일본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재정 지원 근거

地方自治法（令和三年法律第三十七号による改正）

第二百三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は、その議会の議員に対し、議員報酬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は、職務を行うため要する費用の弁償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③ 普通地方公共団体は、条例で、その議会の議員に対し、期末手当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④ 議員報酬、費用弁償及び期末手当の額並びにその支給方法は、条例でこれ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203조 보통지방공공단체는 그 의회의 의원에게 의원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은 직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③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조례로 그 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원보수, 비용변상 및 기말수당의 금액 및 그 지급방법은 조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보수 종류

1) 비용변상

-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변상으로 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 등에 필요한 실비를 의미하는데, 의회의 본회의·위원회에의 출석에 대한 일당이나 여비 등이 이에 해당함(허전, 2017). 반드시 엄밀하게 실제로 소요된 경비와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고, 당해 조례로 정해진 표준적 비용을 기초로 한 정책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임(허전, 2017)

2) 기말수당

- 기말수당은 일본의 생활관습에 따른 생활보조금적인 성격의 수당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여름과 연말에 지급되는 것이 통례임. 기말수당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의원의 전업화 또는 준전업화를 고려하면 그 직무에 비례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급이 인정된 것으로 봄(허전, 2017)

3) 정무조사비

- 의회 의원의 조사연구 및 그 외의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함. 해당 정무조사비에 관한 수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투명성의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표 3-12] 일본 지방의회의원 보수 및 수당

의원보수	비용변상	기말수당	정무조사비
· 생활급적 성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 성격	· 생활보조금적 성격	· 연구활동비 성격

※ 금액 및 지급방법은 조례로 정함

[표 3-13] 일본 지방의회 의원 연봉

지역	연봉
오사카부 - 가장 낮은 보수	약 781만 엔(약 7589만 원)
아이치현 - 가장 높은 보수	약 1172만 엔(약 1억 1000만 원)
도도부현의 지방의회 의원 평균 연봉: 약 993만 엔(약 9600만 원)	

자료: <https://news.yahoo.co.jp/articles/1bcf0e7e96a82651646c2f68f90a9732b87f4781?page=2>

제6절 해외 사례 분석 종합

- 해외 사례의 주요 제도 내용을 보면 프랑스와 미국의 일부 주(뉴멕시코주)에서 무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일 뿐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 각종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표 3-14] 해외 주요국가의 실제 지급액

구분		급여
무급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의 개념이 아닌 월별 수당으로 지급 · 인구 25만 명 미만: 1,555.76€(약 210만 원) · 2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1,944.70€(약 261만 원) ·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2,333.64€(약 314만 원) · 100만 명 이상 125만 명 미만: 2,528.11€(약 340만 원) · 125만 명 이상: 2,722.58€(약 366만 원)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없이 일비(회의참석 및 교통비 등) 지급 · 일비: 154달러(약 20만 원)
유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의 지방의회 의원 평균 연봉: 약 993만 엔(약 9600만 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봉 · 주의회 중 최고 급여는 Hessen주: 60.013 €(약 8000만 원) · 주의회 중 최저 급여는 Mecklenburg-Vorpommern주: 42.749 €(약 5700만 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2019년도 최고 수당은 맨체스터 시의회(인구 약 55만 명) · 연봉: £ 16,926(2,693만 원)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현재 하원의원 평균연봉 45,340달러(약 5800만 원) · 급여 이외에 교통비, 숙박비, 일비등을 추가적으로 받음 · Full-time의회 의원들의 평균연봉 82,358달러(한화로 약 1억 600만 원)

-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정 기준으로는 인구 수, 공무원 임금 증가율, 지자체 규모와 지역적 특성, 명목임금지수, 상위법을 고려한 지자체 보수위원회의 재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되었음. 대부분 정기적,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 및 보수 이외에 각종 의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이 함께 지급되고 있음

[표 3-15] 의회 의원 보수지급 해외사례 종합

구분	보수형태	보수 결정기준	보수 조정 주기	각종 수당	겸직 여부	
무급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수 명예직 · 급여 개념이 아닌 직무에 필요한 수당 지급 · 기본수당, 주거수당, 직무수당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규모별로 수당 결정 · 공무원 보수표를 기준으로 시행령에 근거하여 직무수당 책정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보수를 조정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지역 의원 수당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경비 및 여비 수당 · 운영 및 수행 경비 · 사무실 및 통신수당 · 보좌진 고용 수당 · 퇴직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허용 · 겸직 수당의 합계는 기본 수당의 150%를 넘을 수 없음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없음 · 국회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시 일당 지급 · 10년 근속시 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멕시코주의 경우 유일하게 무급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주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금지
유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보수 및 개발수당 지급(지급액이나 방법은 조례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규모와 지역적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도의 경우 2012년도에 정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다가 2017년도에 의원 보수를 20% 감액하는 조례가 통과되어 현재까지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비(비용변상) · 정무활동비 · 기말수당(보너스)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금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명목으로 매일 보수와 직무경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임금지수를 반영해 보수 수준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7월 1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관리비 · 여비 · 교통비 및 출장비 · 품위유지 및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활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 · 겸직으로 인해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수입에 대해 신고 의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활동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본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결정 · 지자체 규모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5월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책임수당(기관운영비) · 회의참석수당 · 여행 및 생활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허용 · 급여 이외의 외부 소득에 제한은 없으나 경제적인 사항을 의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미국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마다 독립적으로 보수 지급 · 주에 따라 시간제와 상근 의회 존재 · 시간제 의회 의원은 회기 중에 일당 지급 · 상근 입법부 의원은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 또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 · 주 의회에서 활동한 시간을 고려하여 보수 결정 · 근속연수와 직무성과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캘리포니아 시민 보상위원회에서 의원의 연봉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경비 · 마일리지 · 사무실 유지 및 관리 수당 · 자동차 렌탈비 · 통신비 및 사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의 경우 겸직 금지

제4장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요인 분석

- 제1절 월정수당 결정요인 정립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개요
- 제2절 결정요인 선정을 위한 대표요인 및 일반적 지표 적용
- 제3절 인천광역시의회의 핵심역량지표 제안
- 제4절 타 직업군과의 보수 수준 검토

제4장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월정수당 결정요인 정립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개요

1. 광역의회 월정수당 요인 도출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적용

-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 우선 기존의 월정수당 결정기준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음. 행정수요 및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평가모형을 설정하여 광역 자치단체의 전반적 성과수준과 의정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음
- 두 번째, 포괄적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핵심역량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인천광역시의 경우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도와 개선도가 반영될 수 있는 핵심역량지표를 도출하여 의정비 결정요인을 제시하고자 함
- 세 번째, 월정수당을 비롯한 의정비가 생활급적 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이에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월정수당의 범위와 성과반영요소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의정비 결정요인을 제시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정비 산출기준의 개선과 적정한 의정비 산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



[그림 4-1]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접근

2. 의정비 결정모형 및 분석 방법

1) 결정요인분석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도출

- 월정수당 결정요인 산정을 위한 의정비 결정요인 평가모형은 월정수당 점수(순위)와 각 지표들의 점수(순위)와의 관계에 대한 것임.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과 평가지표들 간의 관계를 통해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비교·분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평가구분은 크게 행정관리, 주민의 삶, 의정활동 영역으로 구분함. 행정관리는 다시 재정기반과 지역여건으로 지역의 행·재정적 특성에 관한 것임. 주민의 삶은 소득일자리, 주거·교통·환경, 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통합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세부 지표들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됨. 의정활동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능을 중심으로 입법 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으로 구분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함
- 평가를 위한 지표들은 지방의회의 노력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됨. 즉, 경제성장률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성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음. 다만 몇 지표들은 행정수요적 측면도 같이 내포하고 있음. 예로 주민등록인구수는 행정수요로 작용할 수 있음. 즉, 주민등록인구수는 인구수가 많을수록 지방의회의원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 주민들이 많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적극성으로 해당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인구유입으로 인구수가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성과로도 볼 수 있음

결정요인분석을 위한 평가모형		
평가구분	세부 영역	평가지표
행정관리 (30)	·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경제성장률 -수출액 -지방세
	· 지역여건	-주민등록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주택보급률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1인가구 비율
주민의 삶 (40)	· 소득·일자리	-가구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소득만족도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근로여건 만족도(일자리 만족도)
	· 주거·교통·환경	-지가변동률 -노후주택비율 -주거환경만족도(전반적 만족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건강·안전	-주관적 건강수준인자율 -의료서비스 만족도 -인구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지역안전등급(평균)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교육·문화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여가활동 만족도 -학교교육 효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복지·통합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수 -소비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의정활동 (30)	· 입법가능	-조례안 처리 건수 -의원발의 비율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건수
	· 의감가능	-동의(승인)안 처리건수 -건의 결의안 처리건수
	· 통제가능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예결산안 처리건수

[그림 4-2] 월정수당 결정요인 도출을 위한 포괄적 평가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행정관리, 주민의 삶 영역의 자료는 자료수집의 수월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e-지방지표를 활용함. 의정활동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하였음. 단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제시된 지표 값들의 경우 공개내용과 지표 산출기준 등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자료는 기본적으로 2020년 자료를 이용하고, 2021년 자료가 없는 경우 즉, 자료수집 주기가 2년인 경우 2019년 자료를 활용함
- 분석은 우선, 월정수당과 각 지표들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Z값으로 표준화한 후 T값으로 전환함. 여러 지표들의 종합점수 산출을 위해서는 T값의 곱셈합산(기하평균)을 이용함

제2절 결정요인 선정을 위한 대표요인 및 일반적 지표 적용

- 먼저 각 영역들의 T값을 계산해서 각 지역별 특성을 점수화하였음. 각 영역들의 세부지표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변화와 함께 월정수당과의 관계를 보여줌. 최종적으로 각 지표들의 종합점수와 월정수당과의 관계를 분석함

1. 행정관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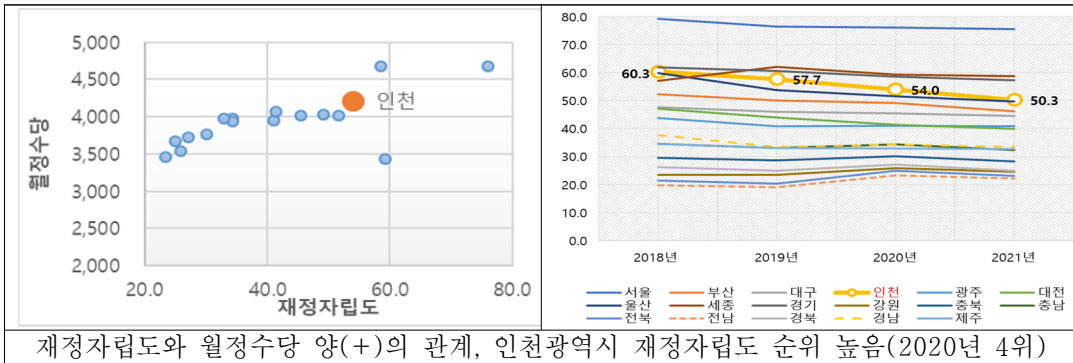
- 행정관리영역에는 재정기반(재정자립도, 경제성장률, 수출액, 지방세)과 지역여건(주민등록인구수, 행정구역면적, 주택보급률,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1인가구비율)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표 4-2] 행정관리영역 t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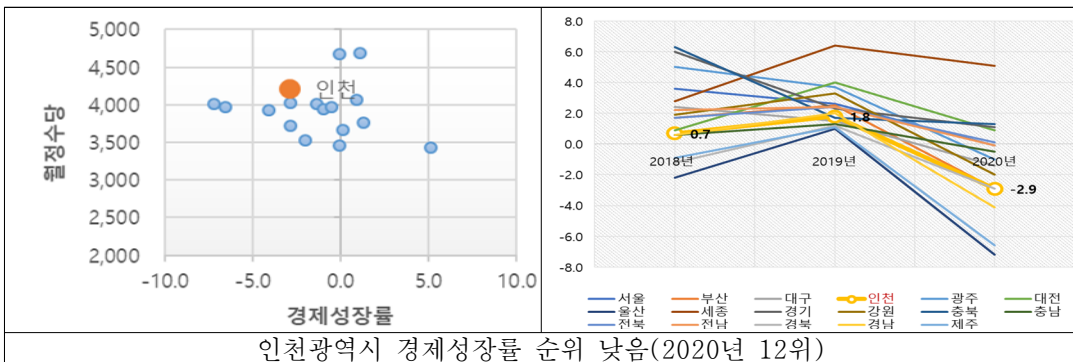
구분	행정관리(11)										
	재정기반				지역여건						
	재정자립도	경제성장률	수출액	지방세	주민등록인구수	행정구역면적	주택보급률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1인가구비율
서울	73.2	54.2	57.3	75.9	69.6	41.5	30.3	52.4	44.7	54.7	59.6
부산	55.0	44.9	44.0	50.3	51.0	41.7	45.3	52.8	46.2	60.5	50.2
대구	52.5	49.9	42.4	47.3	48.1	41.9	42.1	54.1	45.5	50.6	44.6
인천	58.3	44.9	52.4	48.9	49.7	42.2	37.0	38.0	47.6	44.0	34.9
광주	49.6	51.2	44.8	45.0	45.3	41.3	50.1	52.6	47.7	42.7	50.2
대전	49.8	57.6	42.1	45.0	45.3	41.4	36.0	49.0	45.6	44.4	64.8
울산	56.7	30.5	58.2	44.8	44.3	42.2	55.7	43.9	42.7	38.9	32.6
세종	61.9	71.6	40.9	43.1	42.0	41.2	50.9	22.0	80.0	28.8	46.1
경기	61.4	58.3	76.9	76.2	80.0	56.9	39.3	38.9	60.9	40.8	32.3
강원	39.2	47.9	41.1	45.6	45.5	67.7	56.4	62.5	52.1	61.7	60.0
충북	42.1	58.9	48.3	45.7	45.7	52.4	60.1	51.3	51.0	51.7	59.2
충남	45.0	52.9	65.6	47.5	47.3	53.8	57.9	51.0	49.3	51.4	57.0
전북	38.6	54.9	42.3	45.9	46.3	53.5	56.1	52.4	45.4	60.3	55.5
전남	37.5	54.2	49.0	46.8	46.5	60.4	59.7	54.2	44.7	65.6	55.1
경북	40.1	44.9	52.2	48.1	48.8	71.1	64.4	56.3	43.3	62.2	57.7
경남	45.0	40.8	51.8	49.6	50.9	57.5	58.4	53.0	45.4	48.6	44.6
제주	44.0	32.5	40.5	44.2	43.0	43.5	50.4	65.6	53.3	43.2	45.4

1) 재정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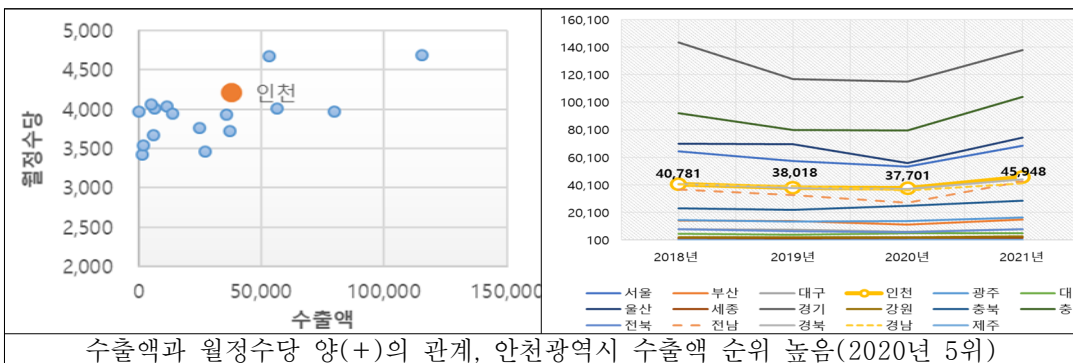
[표 4-3]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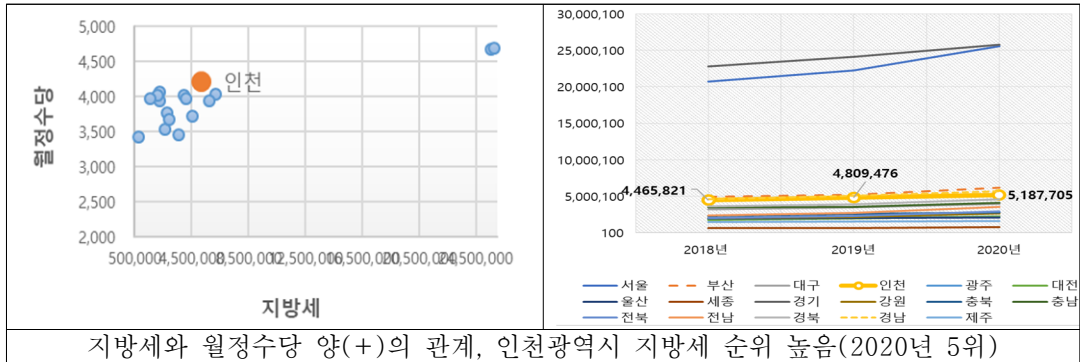
[표 4-4] 경제성장률



[표 4-5]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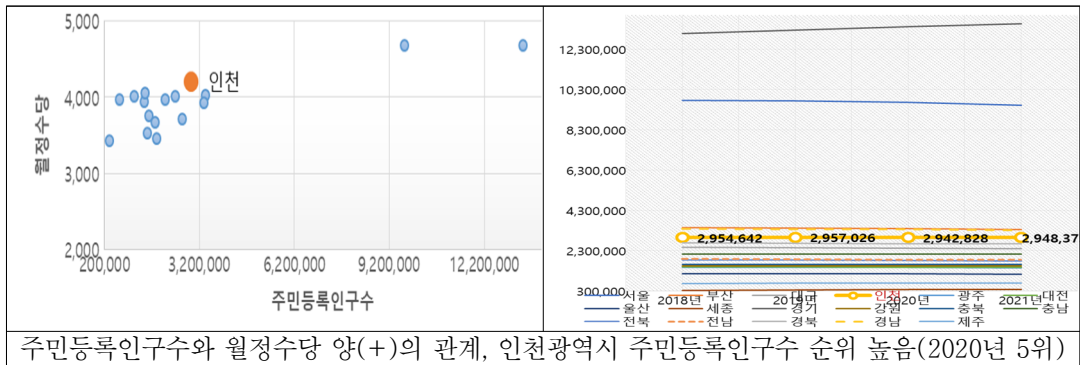


[표 4-6]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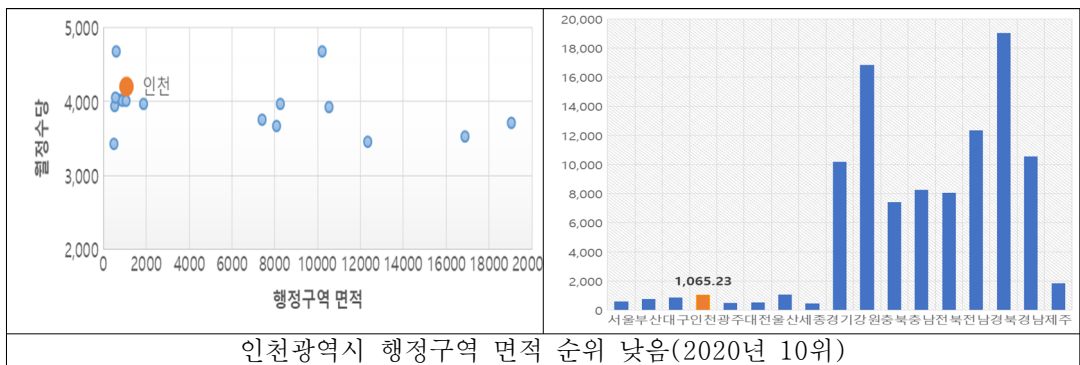


2) 지역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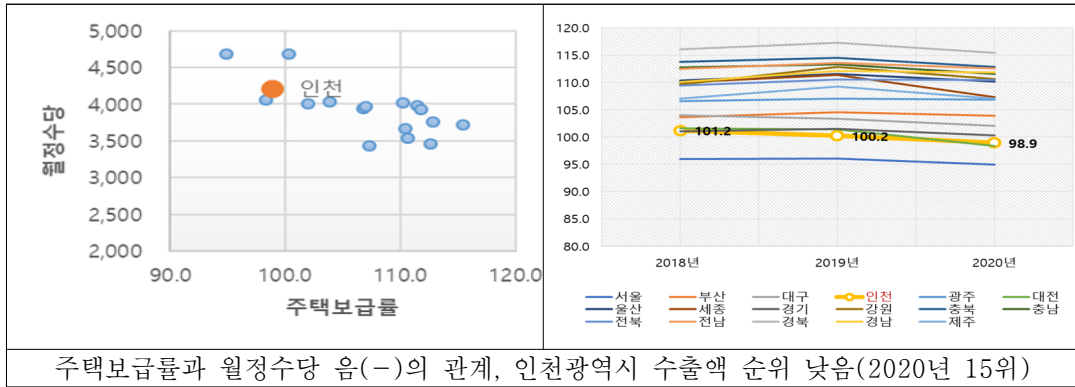
[표 4-7] 주민등록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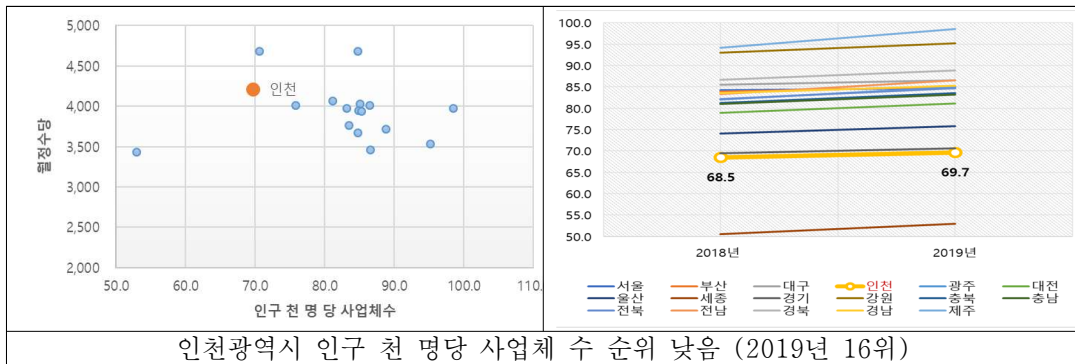
[표 4-8] 행정구역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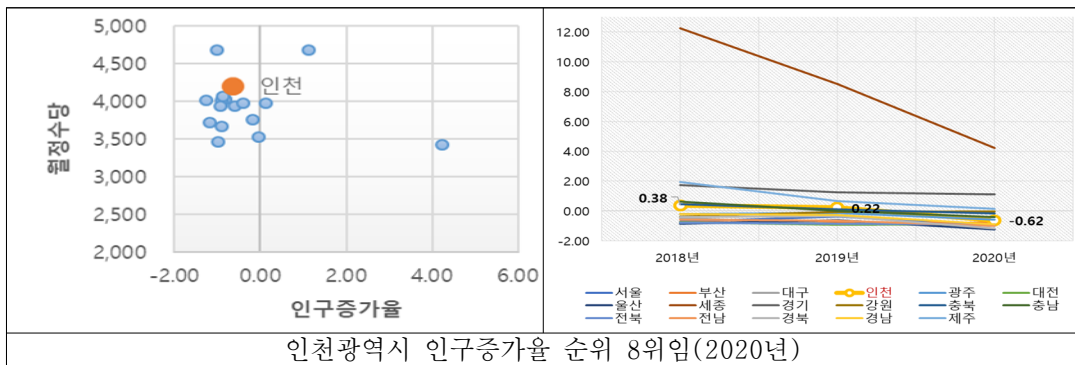
[표 4-9] 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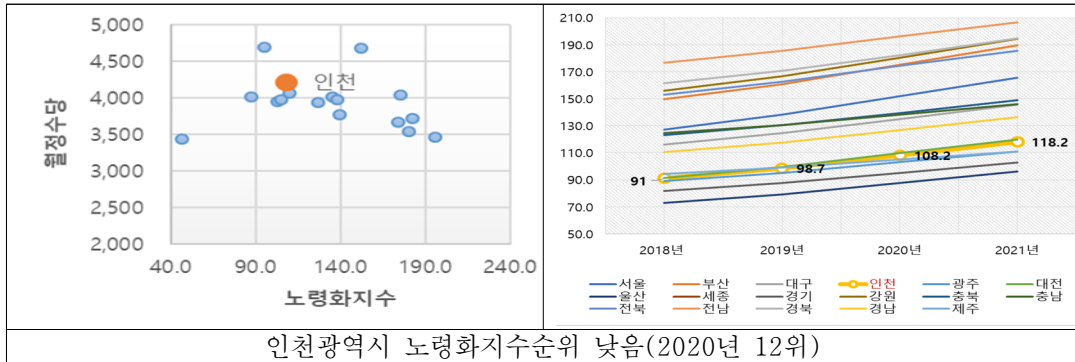
[표 4-10] 인구 천 명당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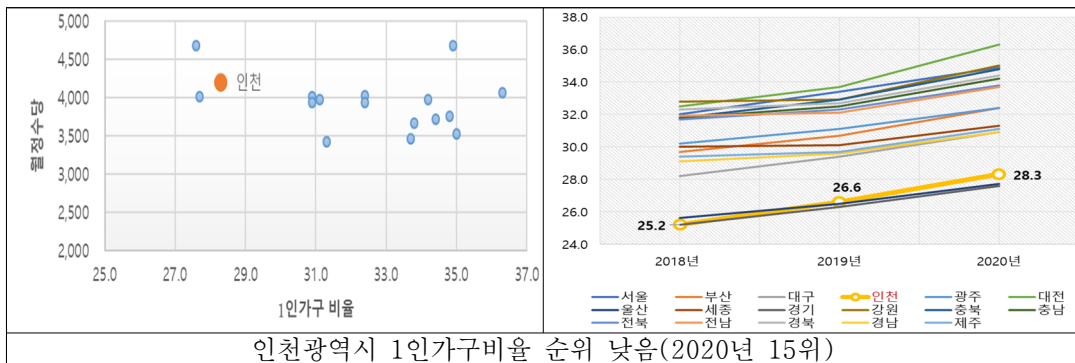
[표 4-11] 인구증가율



[표 4-12] 노령화지수



[표 4-13] 1인가구 비율



2. 주민의 삶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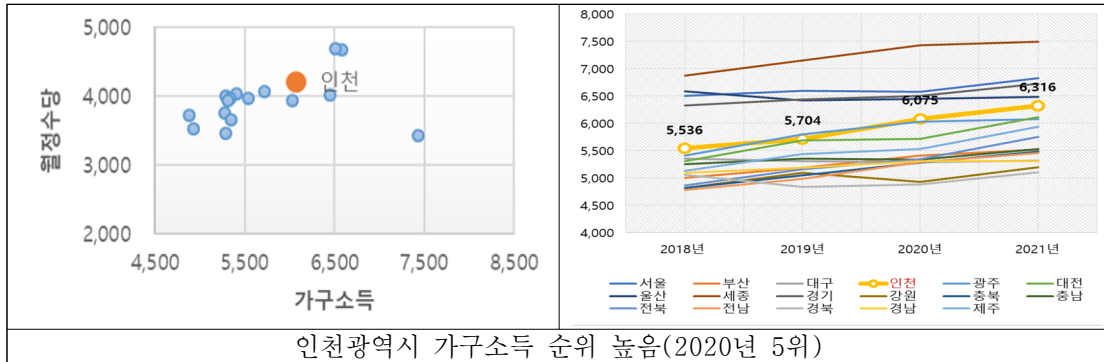
- 주민의 삶 영역에는 소득·일자리(가구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소득만족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근로여건만족도), 주거·교통·환경(지가변동률, 노후주택비율, 주거환경만족도,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건강·안전(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인구천명당 범죄 발생 건수, 지역안전등급, 사회안전에대한 인식), 교육·문화(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여가활동 만족도, 학교교육 효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복지·통합(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소비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표 4-14] 주민의 삶 영역 t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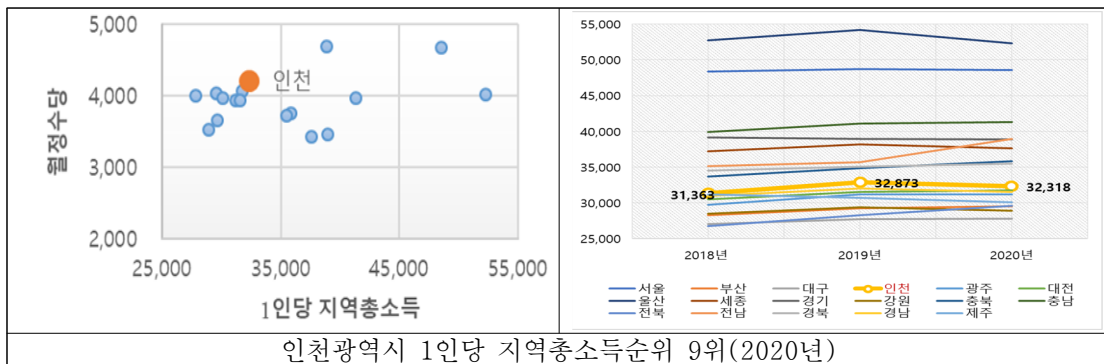
구분	주민의 삶(22)																					
	소득·일자리					주거·교통·환경					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통합				
	가구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소득만족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근로여건만족도	지가변동률	주택비율	주거환경만족도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주관적 건강수준인지율	인구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지역안전등급(평균)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여가동족도	학교교육효과	학생의 교활만족도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소비생활만족도	삶의만족도
서울	62.4	68.9	50.2	46.4	44.8	47.7	56.7	48.0	57.2	32.4	39.6	61.9	53.0	40.4	49.3	42.9	50.2	43.4	58.8	38.1	53.6	56.6
부산	45.3	41.6	36.6	30.8	31.4	36.8	52.6	54.9	51.3	40.5	47.5	45.3	59.7	57.2	58.8	41.8	36.0	52.5	52.9	35.9	36.9	45.7
대구	43.6	39.1	38.7	33.9	35.0	39.3	51.2	46.9	40.3	48.6	51.4	55.1	51.4	52.4	34.2	41.6	37.1	44.2	35.4	48.2	48.5	33.8
인천	55.1	45.6	59.7	54.6	52.1	44.8	52.6	47.0	39.4	56.7	43.5	34.9	51.6	59.6	50.9	42.3	56.2	34.8	51.6	56.5	61.2	49.7
광주	54.4	44.0	39.3	42.1	42.6	40.2	53.1	45.4	61.1	48.6	35.7	63.3	51.6	45.2	59.4	44.5	54.4	51.5	64.3	41.6	40.9	51.4
대전	49.8	44.7	53.6	51.5	49.9	48.9	55.8	47.6	38.6	48.6	39.6	70.7	52.8	62.0	61.9	42.5	49.1	51.5	52.8	44.8	50.0	47.8
울산	60.5	74.3	40.7	40.9	40.5	47.1	44.1	41.4	65.6	48.6	47.5	46.6	46.0	40.4	60.7	42.3	58.6	38.3	46.4	38.6	42.4	46.8
세종	74.8	53.2	74.0	55.8	57.2	74.2	79.2	28.7	43.4	48.6	43.5	35.4	22.7	42.8	71.0	47.5	80.0	58.4	45.2	37.4	80.0	77.8
경기	61.3	55.0	54.3	49.1	48.5	50.0	53.5	34.5	56.3	40.5	43.5	50.2	50.2	26.0	51.7	42.5	51.4	33.5	44.9	52.5	53.6	53.0
강원	38.3	40.7	57.7	51.1	50.3	65.2	46.2	55.6	39.4	48.6	59.2	45.8	49.0	64.4	41.6	66.5	53.8	56.5	51.7	68.1	54.6	55.6
충북	43.4	50.6	38.7	58.9	59.0	47.3	46.6	52.4	36.0	48.6	55.3	52.1	51.4	50.0	40.5	52.1	43.1	48.8	49.9	64.7	44.0	46.4
충남	44.3	58.5	52.9	56.2	56.1	50.8	45.9	50.0	41.7	48.6	51.4	48.3	49.3	59.6	41.1	51.5	47.0	68.1	52.0	57.0	45.5	40.0
전북	44.4	41.7	54.3	44.0	47.0	40.8	47.0	59.2	58.0	48.6	47.5	41.4	43.0	45.2	43.6	55.2	39.2	63.5	33.0	56.4	47.5	47.5
전남	43.6	55.1	60.4	59.3	61.5	55.8	50.9	72.0	49.6	56.7	55.3	53.2	46.5	59.6	49.1	60.2	48.5	47.7	60.3	61.4	50.0	47.1
경북	37.7	50.1	44.8	52.6	51.4	46.0	44.9	61.9	50.7	56.7	55.3	40.1	46.7	50.0	37.1	51.5	46.7	50.6	30.7	55.5	46.0	35.9
경남	43.8	44.4	43.4	50.3	49.6	50.6	40.3	52.8	54.1	48.6	55.3	45.0	50.0	42.8	45.4	48.2	49.1	42.9	55.3	45.1	42.9	55.7
제주	47.2	42.3	50.9	72.6	73.2	64.6	29.4	51.8	67.3	80.0	78.9	60.8	75.4	52.4	53.8	77.0	49.6	63.8	64.9	48.2	51.0	59.2

1) 소득·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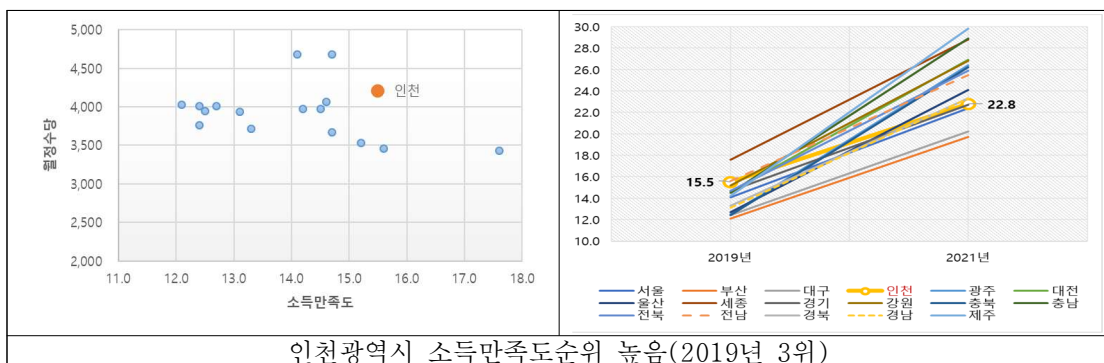
[표 4-15]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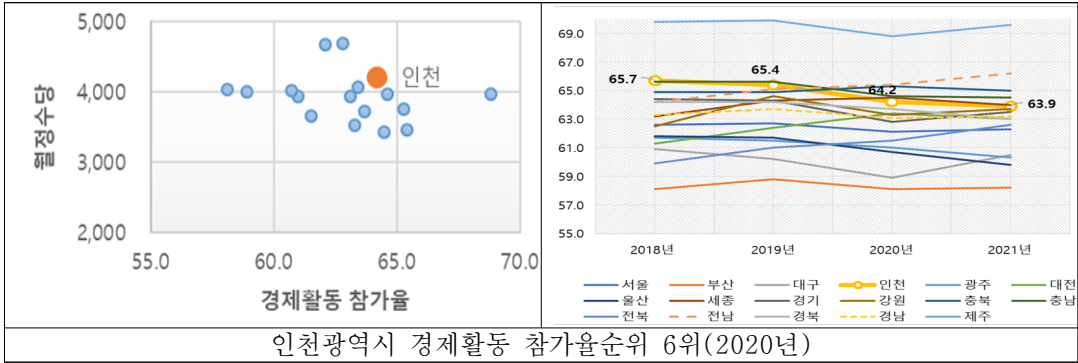
[표 4-16] 1인당 지역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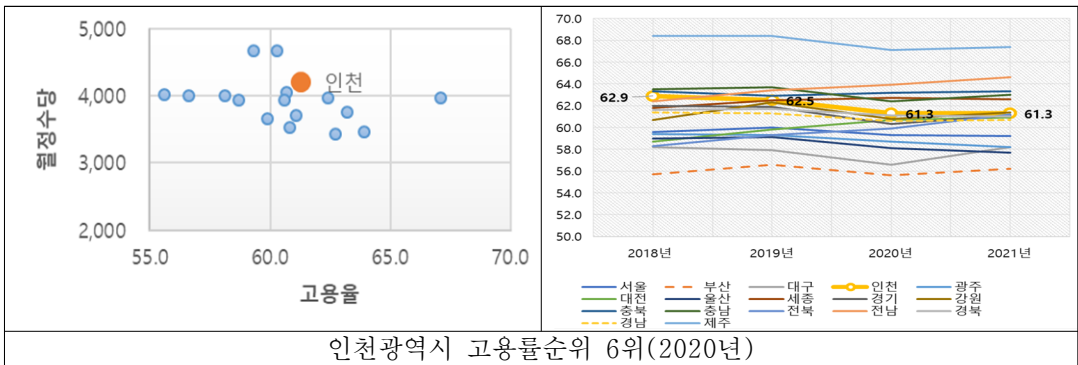
[표 4-17] 소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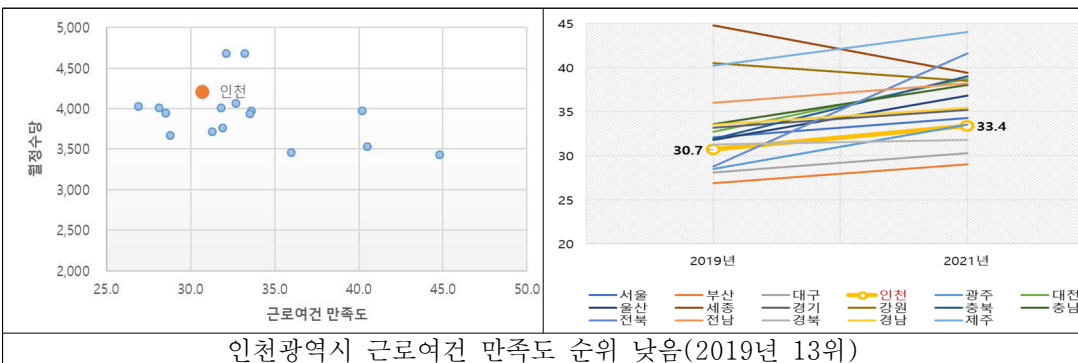
[표 4-18] 경제활동 참가율



[표 4-19]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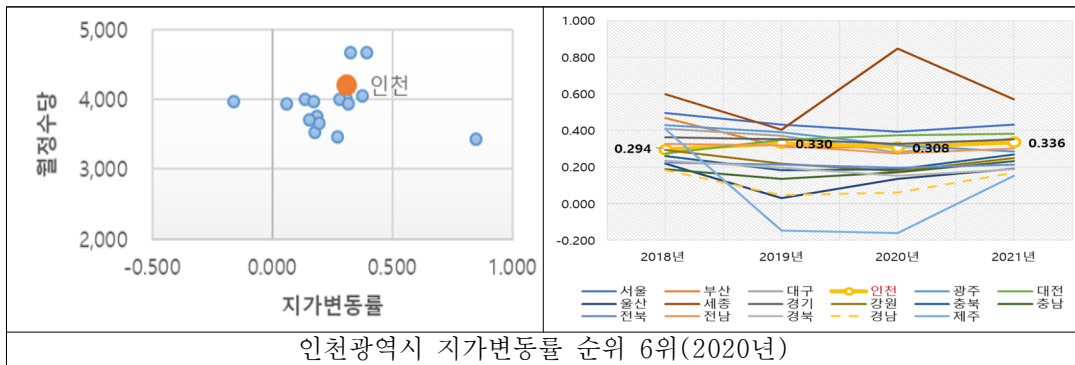


[표 4-20] 근로여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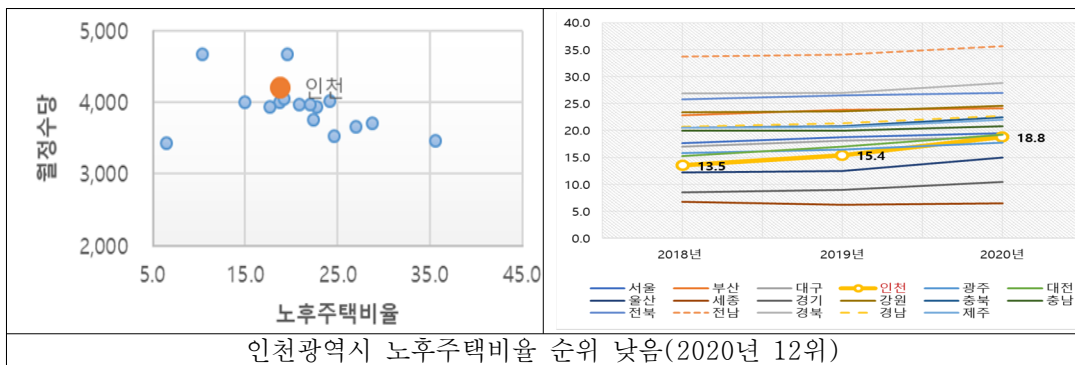


2) 주거 · 교통 ·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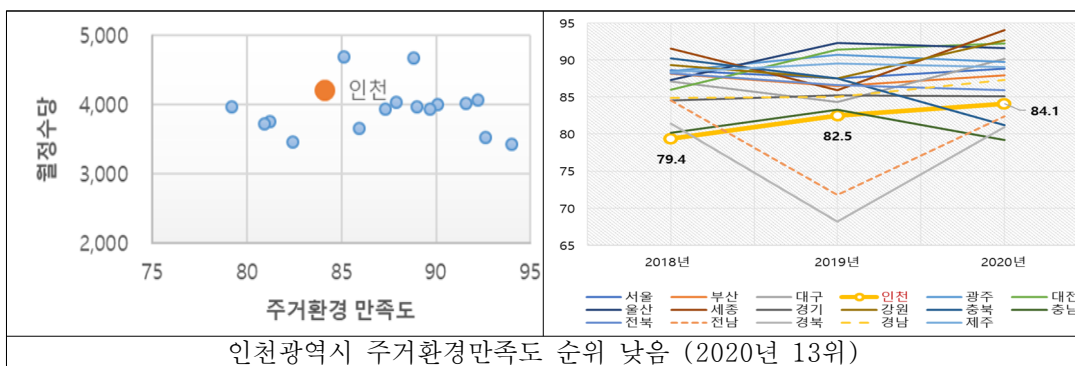
[표 4-21] 지가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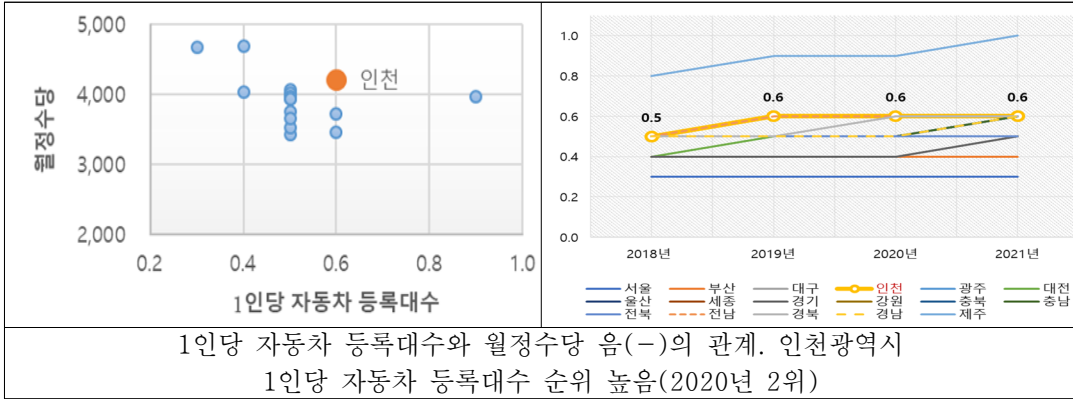
[표 4-22] 노후주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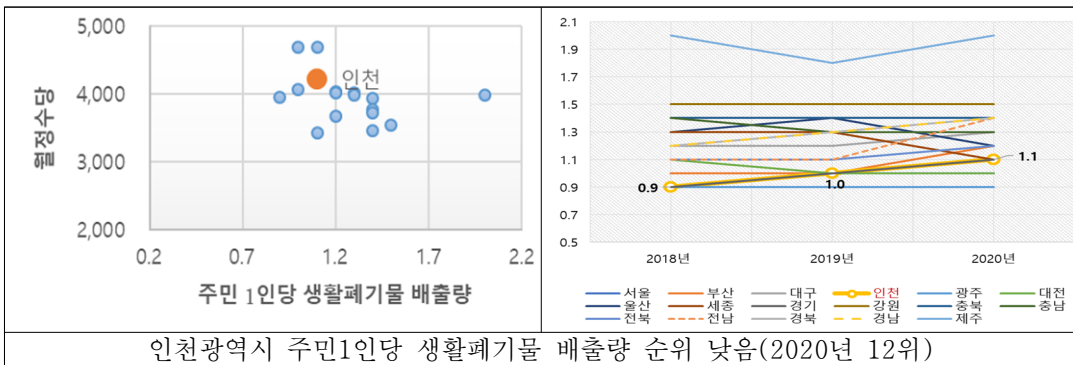
[표 4-23] 주거환경만족도



[표 4-24]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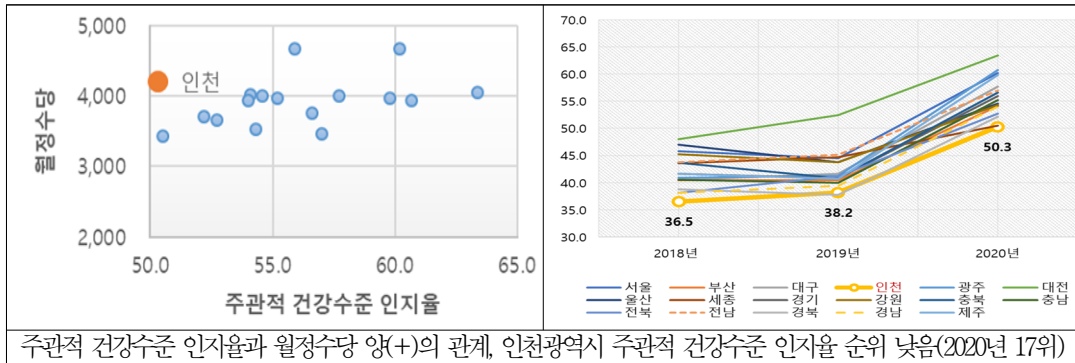


[표 4-25]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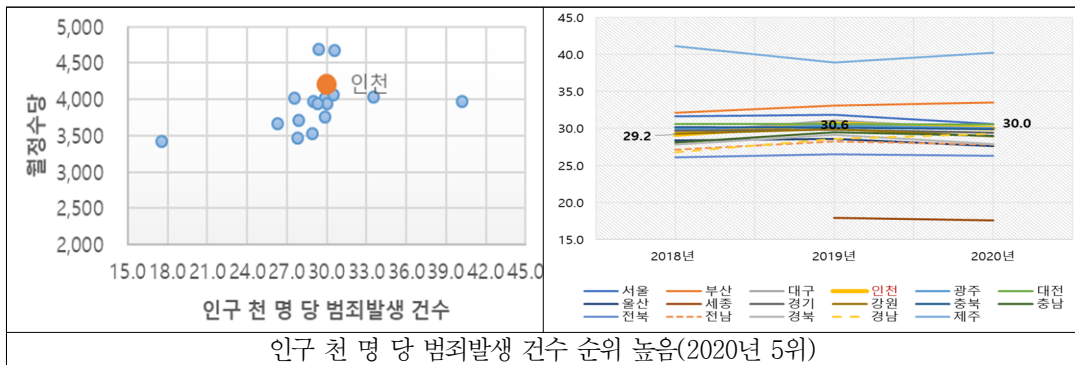


3) 건강 ·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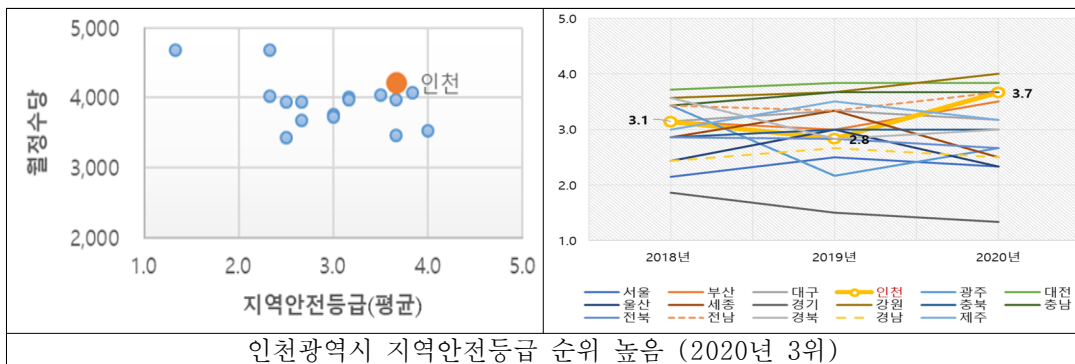
[표 4-2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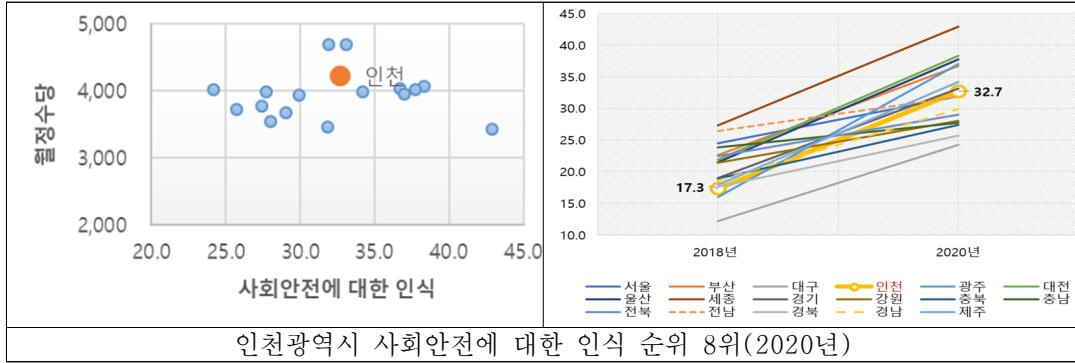
[표 4-27]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



[표 4-28] 지역안전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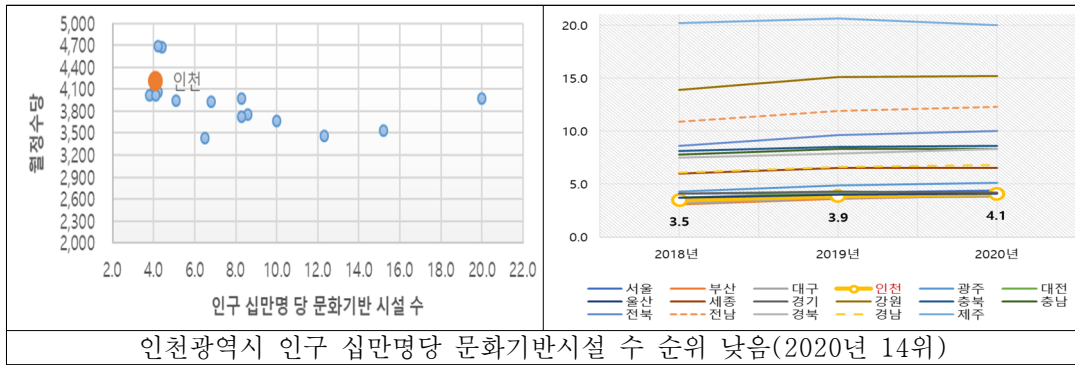


[표 4-29]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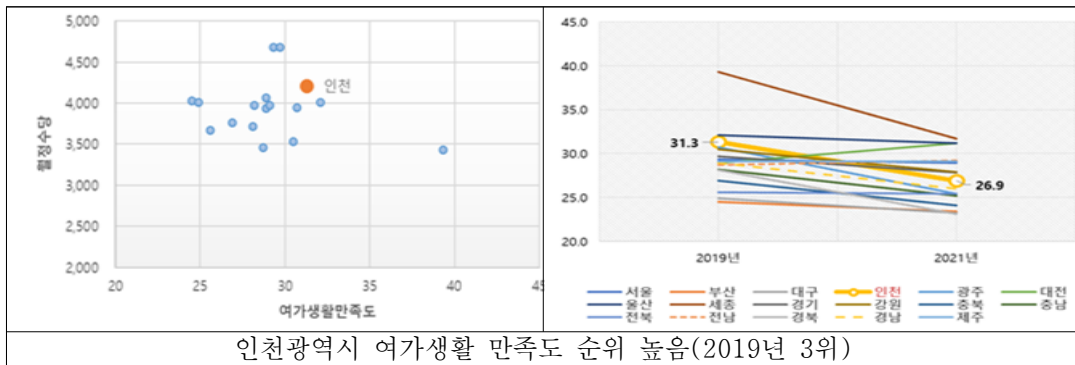


4) 교육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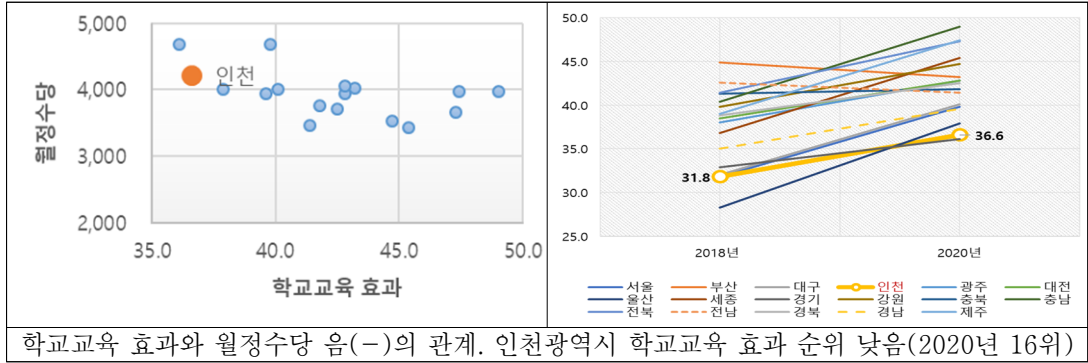
[표 4-30] 인구 십만 명 당 문화 기반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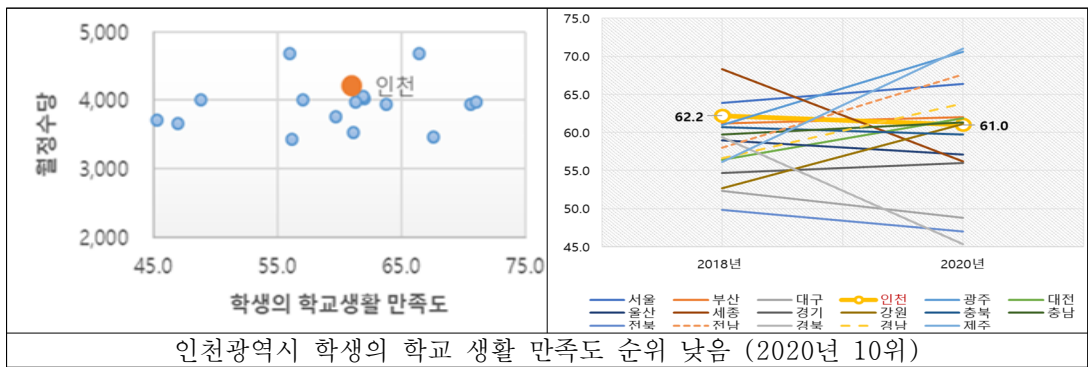
[표 4-31] 여가생활 만족도



[표 4-32] 학교 교육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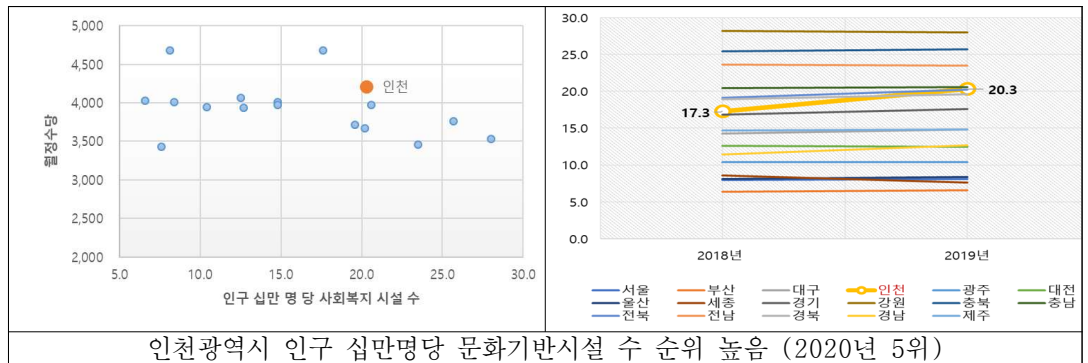


[표 4-33]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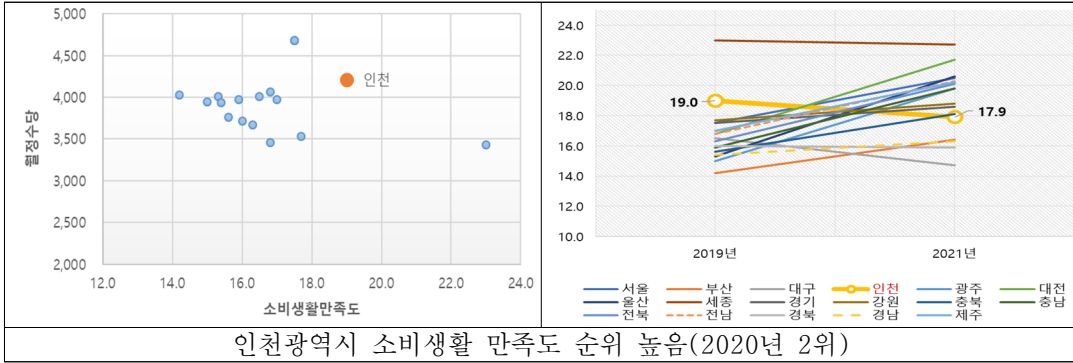


5) 복지 ·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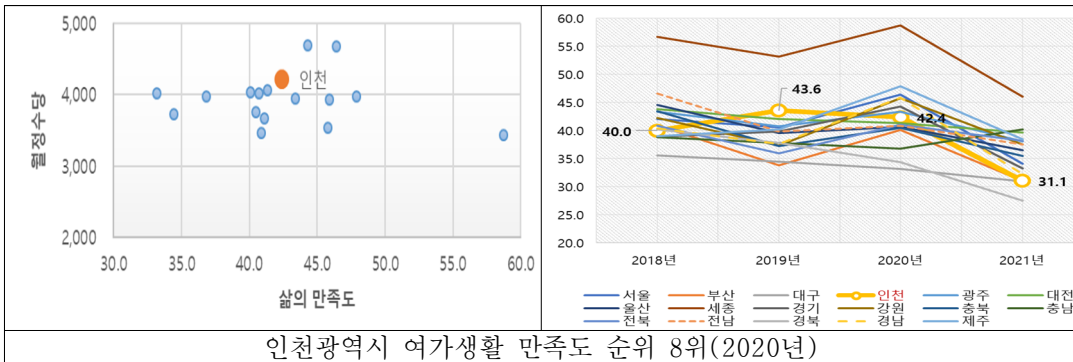
[표 4-34]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표 4-35] 소비생활 만족도



[표 4-36] 삶의 만족도



3. 의정활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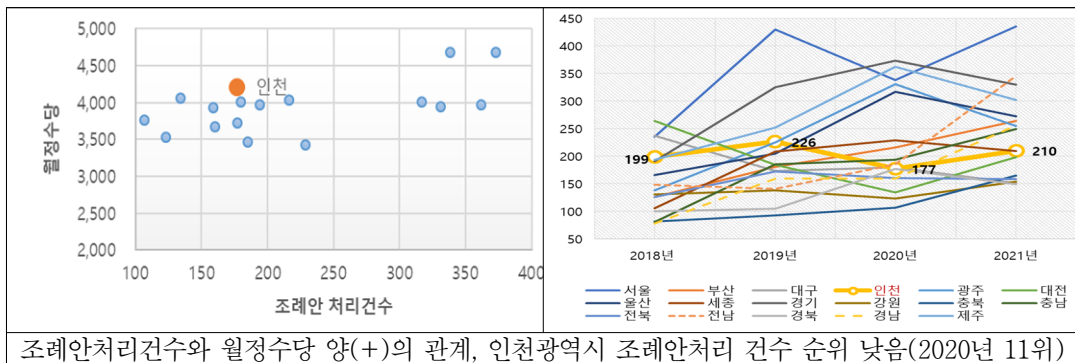
- 의정활동 영역에는 입법기능(조례안 처리건수, 의원발의 비율), 의결기능(동의·승인안 처리건수, 건의·결의안 처리건수), 통제기능(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예결산안 처리건수)로 구분하여 평가함

[표 4-37] 의정활동 영역 t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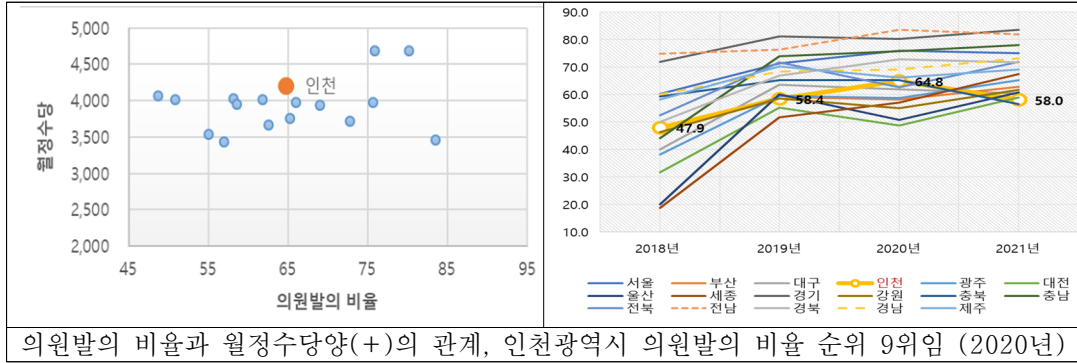
구분	의정활동(6)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조례안 처리건수	의원발의 비율	동의·승인안 처리건수	건의·결의안 처리건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예결산안 처리건수
서울	72.9	60.8	66.4	60.3	78.6	46.3
부산	51.1	43.2	53.4	42.7	49.4	57.2
대구	41.6	46.8	46.6	38.8	45.5	46.3
인천	48.5	49.8	46.8	49.0	47.5	37.6
광주	53.1	43.6	50.2	44.6	46.9	59.3
대전	41.4	33.7	42.5	43.7	46.2	42.0
울산	58.6	35.8	38.7	45.6	45.8	50.6
세종	43.7	42.0	48.8	39.7	45.5	50.6
경기	71.2	65.1	59.9	57.4	73.7	50.6
강원	41.5	40.0	46.2	46.6	44.3	63.7
충북	40.2	50.2	45.9	42.7	45.2	57.2
충남	50.2	60.6	45.2	57.4	46.6	65.8
전북	41.1	47.6	48.4	74.0	47.6	65.8
전남	49.8	68.3	43.0	67.7	44.6	37.6
경북	43.4	57.7	41.9	47.1	45.7	37.6
경남	45.2	53.9	47.3	49.5	46.4	39.8
제주	56.6	50.9	78.8	43.2	50.3	42.0

1) 입법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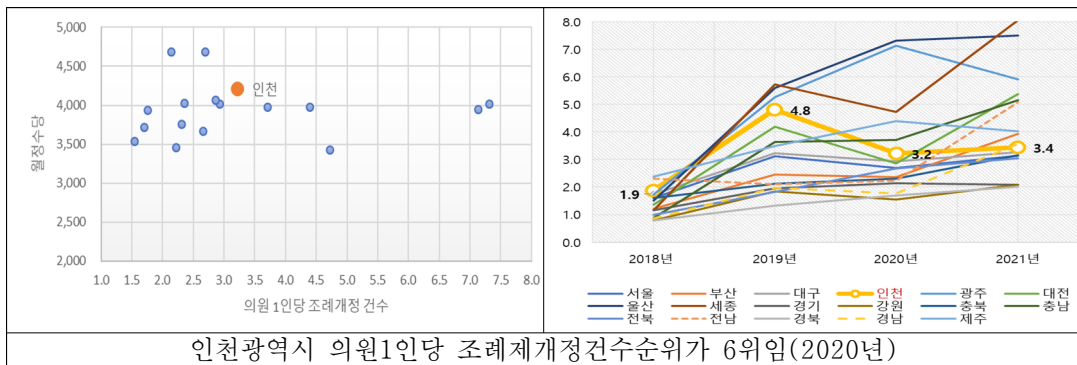
[표 4-38] 조례안 처리건수



[표 4-39] 의원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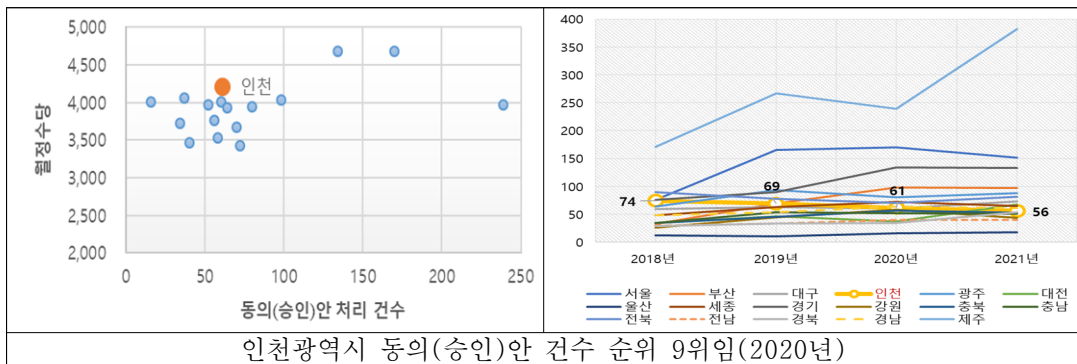


[표 4-40]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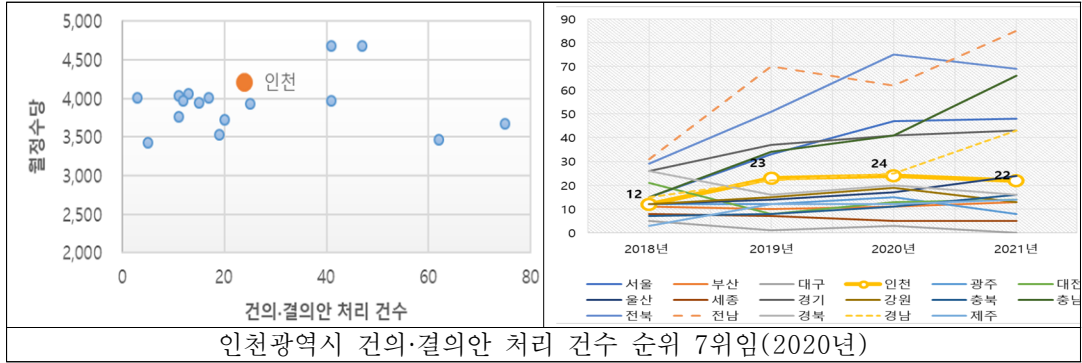


2) 의결기능

[표 4-41] 동의(승인)안 처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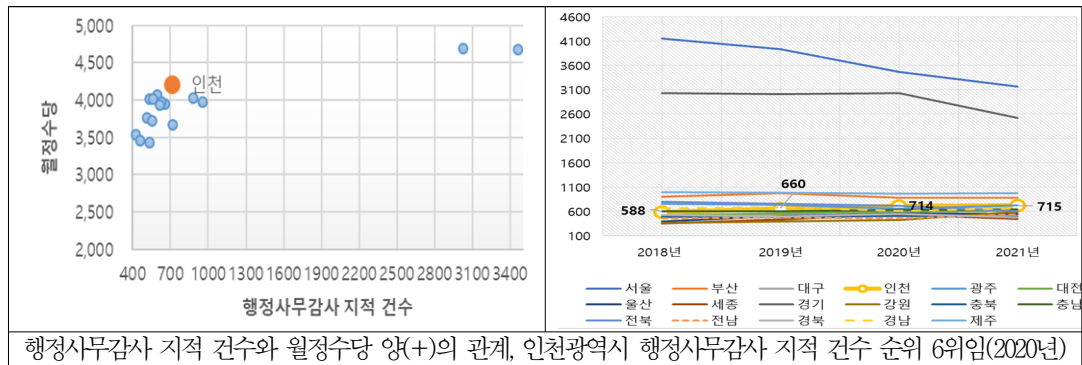


[표 4-42] 건의·결의안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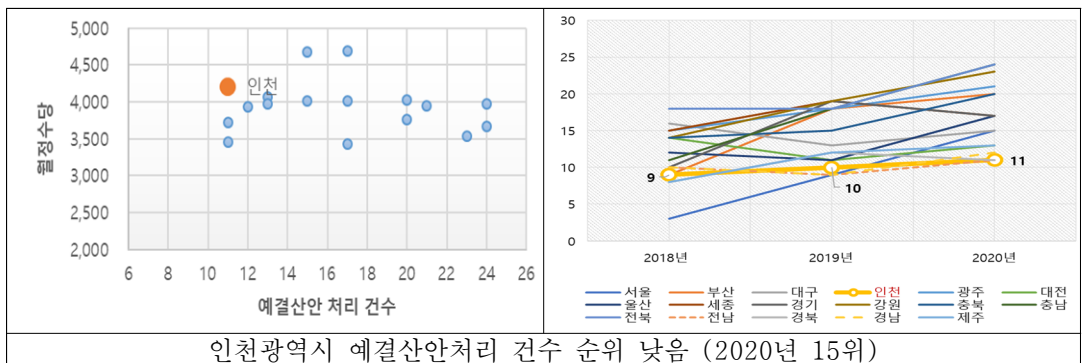


3) 통제기능

[표 4-43]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



[표 4-44] 예결산안 처리 건수



4. 분석결과 종합

- 월정수당의 점수 및 순위와 각 결정요인들의 종합점수와 순위를 비교한 결과, 인천광역시
의 경우 월정수당은 57.4점으로 3위로 순위가 높는데 반해, 전체점수가 44.8로 순위
가 14위에 해당해서 월정수당에 비해 결정요인의 점수와 순위가 낮음. 이는 일반적인
모형을 적용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의정비 수준은 타 광역의회와 비교했을 때 현재수준
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함
- 다른 의미로는 인천광역시의회가 현재 수준의 의정비 수준을 위해서는 행정관리, 주민의
삶, 의정활동 모든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해야 함. 영역별로 보면 행정
관리가 16위로 가장 낮고, 의정활동과 주민의 삶의 각각 12위, 7위로 모든 영역이 월정
수당의 점수 및 순위에 비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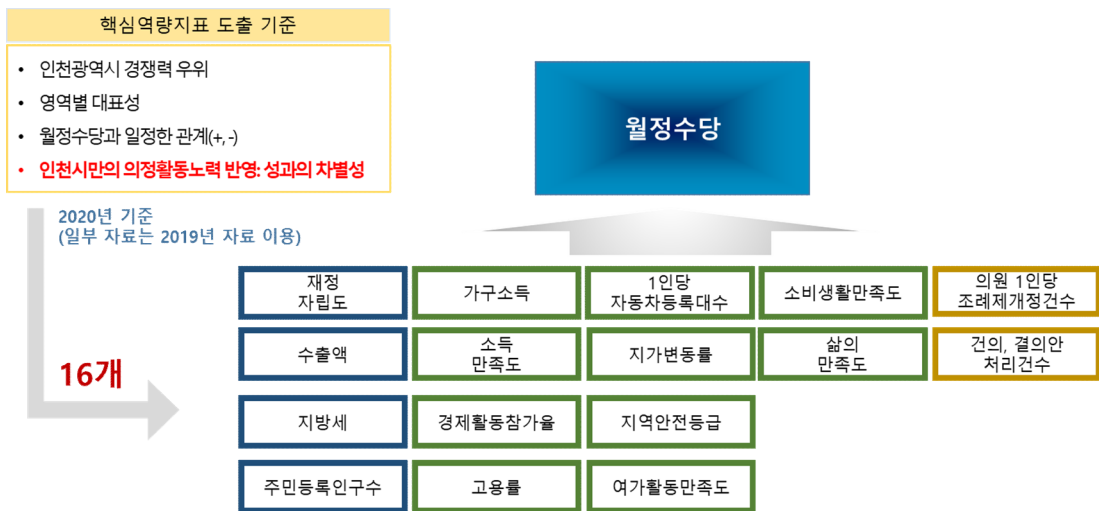
[표 4-45] 종합점수 및 순위

구분	월정수당		결정요인 점수				결정요인 순위			
	점수	순위	전체	행정 관리	주민의 삶	의정 활동	전체	행정 관리	주민의 삶	의정 활동
서울	70.6	2	52.6	54.1	49.3	63.3	3	2	8	1
부산	52.4	5	46.3	49.0	44.2	49.2	15	10	16	8
대구	51.8	7	44.1	47.0	42.6	44.2	17	12	17	16
인천	57.3	3	47.6	44.8	49.4	46.3	14	16	7	12
광주	49.9	10	48.1	47.2	48.2	49.3	11	11	10	7
대전	53.3	4	47.8	46.8	50.2	41.4	13	13	6	17
울산	51.9	6	45.9	43.7	47.3	45.3	16	17	12	13
세종	35.4	17	49.4	45.2	52.9	44.9	7	15	3	15
경기	70.8	1	51.2	54.1	47.2	62.5	5	1	13	2
강원	38.4	15	51.1	51.9	52.0	46.5	6	5	4	11
충북	44.8	12	49.0	51.2	48.6	46.6	8	7	9	10
충남	50.8	8	51.4	52.3	50.3	53.8	4	4	5	3
전북	42.2	14	48.7	49.7	47.1	52.9	9	8	14	4
전남	36.3	16	52.9	51.6	54.3	50.5	2	6	2	6
경북	43.6	13	48.1	52.8	46.8	45.2	10	3	15	14
경남	49.7	11	48.1	49.3	47.8	46.8	12	9	11	9
제주	50.7	9	53.4	45.3	58.2	52.4	1	14	1	5

제3절 인천광역시의회의 핵심역량지표 제안

1. 핵심역량지표 도출

- 위의 일반모형을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핵심역량지표를 도출하여 의정비 결정요인을 산출할 수 있음. 여기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핵심역량지표를 산출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비 산출을 위한 핵심역량지표는 인천광역시가 경쟁력 우위에 있고, 월정수당과 일정한 관계가 있고, 의정활동 노력을 반영하면서 영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 구성됨
- 이렇게 도출된 지표는 총 16개로, 재정자립도, 수출액, 지방세, 주민등록인구수,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자가변동률, 지역안전등급, 소비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건수, 건의 및 결의안 처리건수 등임



[그림 4-3] 인천광역시의회의 핵심역량지표 제안

[표 4-46] 핵심역량지표 도출

구분	지표	월정수당과의 상관관계	경쟁력	대표성	핵심역량 지표	
행정관리 영역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0.697**	4	✓	0
		경제성장률	-0.132	12		
		수출액	0.624**	5	✓	0
		지방세	0.811**	5	✓	0
	지역여건	주민등록인구수	.802**	5	✓	0
		행정구역면적	-0.354	10		
		주택보급률	-0.746**	15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0.075	16		
		인구증가율	-0.205	8		
		노령화지수	-0.227	12		
1인가구 비율	-0.338	15				
주민의 삶 영역	소득·일자 리	가구소득	0.337	5	✓	0
		1인당 지역총소득	0.318	9		
		소득만족도	-0.256	3	✓	0
		경제활동참가율	-0.318	6	✓	0
		고용률	-0.306	6	✓	0
		근로여건만족도	-0.395	13		
	주거·교통· 환경	지가변동률	-0.055	6	✓	0
		노후주택비율	-0.387	12		
		주거환경만족도	-0.029	13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0.375	2	✓	0
	건강·안전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0.341	12		
		주관적 건강수준인지율	0.340	17		
		인구천명당 범죄발생건수	0.406	5		
		지역안전등급	-0.464	3	✓	0
	교육·문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0.039	8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0.354)	14		
		여가활동만족도	-0.177	3	✓	0
		학교교육효과	-0.536**	16		
	복지·통합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0.153	10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0.394	5		
소비생활만족도		-0.157	2	✓	0	
의정활동 영역	입법기능	삶의 만족도	-0.101	8	✓	0
		조례안 처리건수	0.571*	11		
		의원발의 비율	0.744**	9		
	의결기능	의원1인당 조례제개정건수	0.009	6	✓	0
		동의(승인)안 처리건수	0.462	9		
	통제기능	건의, 결의안 처리건수	0.068	7	✓	0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		0.818**	6			
	예결산안 처리건수	-0.150	15			

2. 핵심역량지표를 이용한 결정요인 평가

- 핵심역량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은 적정함. 즉,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 순위는 3위인데, 핵심역량지표 종합점수는 53.9점으로 순위는 2위로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해당 지표들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즉, 인천광역시의 월정수당 산출기준으로 해당 16개 핵심역량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47] 핵심지표 점수 및 순위

구분	월정수당		핵심지표(점수)																	핵심지표 종합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재정자립도	수출액	지방세	주민등록인구수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지가변동률	1인당자동차등록대수	지역안전등급	여가활동만족도	소생활만족도	삶의만족도	의원1인당조례제정건수	건의결의안처리건수			
서울	70.6	2	73.2	57.3	75.9	69.6	62.4	50.2	46.4	44.8	56.7	32.4	40.4	50.2	53.6	56.6	46.7	60.3	53.6	4	
부산	52.4	5	55.0	44.0	50.3	51.0	45.3	36.6	30.8	31.4	52.6	40.5	57.2	36.0	36.9	45.7	44.7	42.7	43.1	17	
대구	51.8	7	52.5	42.4	47.3	48.1	43.6	38.7	33.9	35.0	51.2	48.6	52.4	37.1	48.5	33.8	48.0	38.8	43.2	16	
인천	57.3	3	58.3	52.4	48.9	49.7	55.1	59.7	54.6	52.1	52.6	56.7	59.6	56.2	61.2	49.7	49.7	49.0	53.9	2	
광주	49.9	10	49.6	44.8	45.0	45.3	54.4	39.3	42.1	42.6	53.1	48.6	45.2	54.4	40.9	51.4	72.3	44.6	47.8	11	
대전	53.3	4	49.8	42.1	45.0	45.3	49.8	53.6	51.5	49.9	55.8	48.6	62.0	49.1	50.0	47.8	47.6	43.7	49.3	8	
울산	51.9	6	56.7	58.2	44.8	44.3	60.5	40.7	40.9	40.5	44.1	48.6	40.4	58.6	42.4	46.8	73.4	45.6	48.4	9	
세종	35.4	17	61.9	40.9	43.1	42.0	74.8	74.0	55.8	57.2	79.2	48.6	42.8	80.0	80.0	77.8	58.4	39.7	57.8	1	
경기	70.8	1	61.4	76.9	76.2	80.0	61.3	54.3	49.1	48.5	53.5	40.5	26.0	51.4	53.6	53.0	43.4	57.4	53.6	3	
강원	38.4	15	39.2	41.1	45.6	45.5	38.3	57.7	51.1	50.3	46.2	48.6	64.4	53.8	54.6	55.6	40.0	46.6	48.1	10	
충북	44.8	12	42.1	48.3	45.7	45.7	43.4	38.7	58.9	59.0	46.6	48.6	50.0	43.1	44.0	46.4	44.4	42.7	46.4	14	
충남	50.8	8	45.0	65.6	47.5	47.3	44.3	52.9	56.2	56.1	45.9	48.6	59.6	47.0	45.5	40.0	52.5	57.4	50.3	7	
전북	42.2	14	38.6	42.3	45.9	46.3	44.4	54.3	44.0	47.0	47.0	48.6	45.2	39.2	47.5	47.5	46.5	74.0	46.9	13	
전남	36.3	16	37.5	49.0	46.8	46.5	43.6	60.4	59.3	61.5	50.9	56.7	59.6	48.5	50.0	47.1	43.9	67.7	51.2	5	
경북	43.6	13	40.1	52.2	48.1	48.8	37.7	44.8	52.6	51.4	44.9	56.7	50.0	46.7	46.0	35.9	40.9	47.1	46.1	15	
경남	49.7	11	45.0	51.8	49.6	50.9	43.8	43.4	50.3	49.6	40.3	48.6	42.8	49.1	42.9	55.7	41.2	49.5	47.0	12	
제주	50.7	9	44.0	40.5	44.2	43.0	47.2	50.9	72.6	73.2	29.4	80.0	52.4	49.6	51.0	59.2	56.5	43.2	50.8	6	

제4절 타 직업군과의 보수 수준 검토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대내외적 형평성을 검토하고자 함
 -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보수와 지방의원 의정비를 비교함
 -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모두 포함한 의정비를 비교함

[표 4-48] 타 직업군 분석범위

구분	분석범위
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수당 종류 및 수당 규모 • 국회의원 수당 외 재정지원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 • 기본급, 수당 등의 세부기준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 직원 평균 보수 비교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 비교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과의 수준 비교 •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분석 •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유형에 따른 비교 수준 제시

1. 국회의원 수당 및 재정적 지원과 비교

1)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규정

- 「국회법」 제30조에서 ‘의원은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³⁾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서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하고,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규칙에서는 다시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과

3) 해당 법률은 2022년 1월 4일 법률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입법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 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거의 매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실제 지급할 수당 등을 규정하여 실제 받는 금액은 법률상 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일반의원의 경우 법률상(1989년 기준금액) 수당금액은 1,014,000원이지만, 2022년 조정된 수당금액은 6,907,300원이고, 입법활동비는 법률상 1,200,000원이지만 2022년 지급 규정에 따른 금액은 3,136,000원임
-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수당 외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기타수당 및 실비변상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국회의장 등은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음. 이외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됨(김선거·김권일, 2020)

[표 4-49]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규정

구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2022.1.4. 전부개정)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2022.2.15. 개정)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caption style="text-align: center;"><별표 2> 수당</caption>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96,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회부의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275,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014,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caption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 수당</caption>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0,182,6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회부의장</td> <td style="text-align: right;">8,684,5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원</td> <td style="text-align: right;">6,907,3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액의 100분의 9를 지급함 ·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기타수당 및 실비변상 등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정수당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함. 다만 직급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10,182,600원	국회부의장	8,684,500원	국회의원	6,907,300원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10,182,600원																	
국회부의장	8,684,500원																	
국회의원	6,907,300원																	

구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22.1.4. 전부개정)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2022.2.15. 개정)								
		<p><별표 1의 3> 직급보조비</p> <table border="1" data-bbox="906 555 1331 696">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국회의장</td> <td>2,250,000원</td> </tr> <tr> <td>국회부의장</td> <td>1,750,000원</td> </tr> <tr> <td>위원장</td> <td>1,65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2,250,000원	국회부의장	1,750,000원	위원장	1,650,000원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2,250,000원									
국회부의장	1,750,000원									
위원장	1,650,000원									
입법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함 <p><별표 3></p> <table border="1" data-bbox="438 987 861 1061"> <thead> <tr> <th>내역</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입법활동비</td> <td>1,200,000원</td> </tr> </tbody> </table>	내역	지급액	입법활동비	1,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매월) <p><별표 2></p> <table border="1" data-bbox="906 913 1331 987"> <thead> <tr> <th>내역</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입법활동비</td> <td>3,136,000원</td> </tr> </tbody> </table>	내역	지급액	입법활동비	3,136,000원
내역	지급액									
입법활동비	1,200,000원									
내역	지급액									
입법활동비	3,136,000원									
특별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 <p><별표 4></p> <table border="1" data-bbox="438 1330 861 1435"> <thead> <tr> <th>내역</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특별활동비</td> <td>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활동비의 30/100 상당액 	내역	지급액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 <p><별표 3></p> <table border="1" data-bbox="906 1312 1331 1417"> <thead> <tr> <th>내역</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특별활동비</td> <td>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td> </tr> </tbody> </table>	내역	지급액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내역	지급액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내역	지급액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입법 및 정책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지급기준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함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 지급 	-								

자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2) 국회의원 수당내역 및 연도별 변화

-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국회의원이 실제 받는 수당으로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지급되는 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연단위로 지급되는 상여수당, 그리고 경비에 해당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로 구분할 수 있고, 2022년 기준 국회의원은 1인당 월 평균 12,855,280원을 수령하였으며 연액은 154,263,460원임

[표 4-50] 국회의원 수당 등 실제 지급 현황(2022년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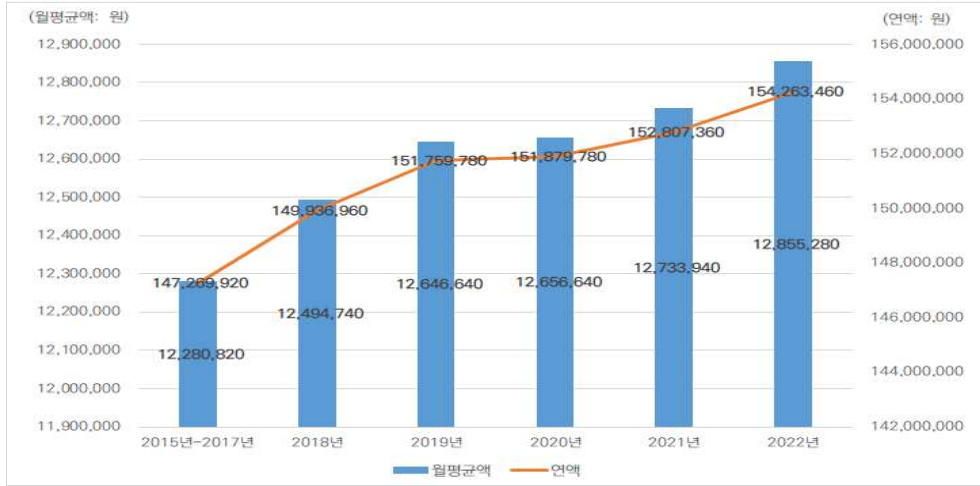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고
수당(월)	일반수당	6,907,300	
	관리업무수당	621,650	· 일반수당의 9%
	정액급식비	140,000	
	소계	7,669,950	
상여수당(연)	정근수당	6,907,300	· 1, 7월 각 일반수당의 50% 지급(연 100%)
	명절휴가비	8,288,760	· 설, 추석 각 일반수당의 60% 지급(연 120%)
	소계	15,196,060	
경비(월)	입법활동비	3,136,000	
	특별활동비	784,000	· 300일 기준(회기 중 1일당 31,360원)
	소계	3,920,000	
월평균액		12,855,280	
연액		154,263,460	

주1: 가족수당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

주2: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 인상분은 연 1,456,10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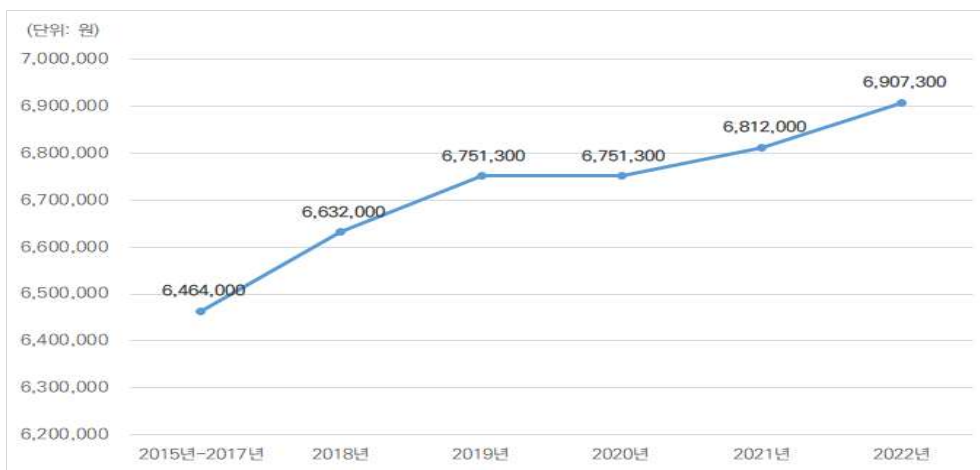
자료: 열린국회정보(<http://open.assembly.go.kr>), 연도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표, access date: 2022.3.23.

- 연간총액 및 월평균 연도별 변화를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 전체 규모가 2022년 기준 월평균액은 12,855,280원이고, 연액은 154,263,460원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4-4] 국회의원 수당 전체 연도별 변화

- 항목별로 보면 첫째, 국회의원의 보수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의 경우, 2017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2017년 6,464,000원에서 2022년 6,907,300원으로 증가함
- 2017년 대비 2018년 2.60%, 2018년 대비 2019년 1.80% 증가하던 것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일반수당을 인상하지 않고, 2021년에는 0.90% 증가하였다가 2022년 다시 2021년 대비 1.40% 증가하여 2017년부터 2022년의 6년간 연평균 1.34%의 증가율을 보임



[그림 4-5] 국회의원 수당 중 일반수당의 연도별 변화

- 관리업무수당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산출기준액이 일반수당으로, 일반수당의 증가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증가함. 이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은 2017년 월 581,760원에서 2022년 621,650원으로 증가함
- 입법활동비와 정책활동비는 2015년 이후 각각 월 3,136,000원, 784,000원으로 변화가 없음. 한편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위원장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국회의장은 2,250천 원, 국회부의장은 1,750천 원, 위원장은 1,650천 원임. 국회의장의 직급보조비는 대통령(3,200천 원)보다는 낮지만 국무총리(1,720천 원)보다 높음
- 국회부의장의 직급보조비는 국회부의장과 유사한 수준이고, 위원장의 직급보조비는 국무총리보다는 낮지만 부총리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 4-51] 국회의원 직급보조비(2019년 기준)

구분	지급액(월)
국회의장	2,250,000원
국회부의장	1,750,000원
위원장	1,650,000원

자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외 재정지원

(1) 입법 및 정책개발비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용역 등을 지원함
 - 경비는 기본지원과 추가지원, 인센티브로 나뉨
 - 경비구성은 기본지원 70%, 추가지원 30%로 구성됨

[표 4-52] 입법 및 정책개발비 경비 구성

구분	기본지원(70%)	추가지원(30%)	인센티브	
			균등	특별
금액 (비율)	47억 4,610만 원 (61.7%)	20억 3,000만 원 (26.4%)	7억 1,820만 원 (9.4%)	1억 9,679만 원 (2.6%)

자료: 국회사무처(2021)

- 의원1인당 경비배분(기본지원)을 보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등으로 1,578만 원이 배정되고, 이외 추가지원으로 677만 원, 인센티브로 특정업무경비가 매월 19만 9,500원을 지급함

[표 4-53] 국회의원 1인당 경비 배분(기본지원)

(의원 1인당 평균배분액)

구분	기본지원	추가지원 (8/31까지 신청)	인센티브
일반수용비 (210-01)	11,453,900원	6,766,660원	-
사업추진비 (240-01)	1,532,800원		-
정책연구비 (260-02)	2,800,000원		-
특정업무경비 (250-03)	-	-	+ 균등인센티브 (1인당 매월 199,500원)
포상금 (310-03)	-	-	특별인센티브 (추후 결정)
계	15,786,700원	6,766,660원	-

자료: 국회사무처(2021)

- 위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입법 및 정책개발 행사 및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및 정책연구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가능하고,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 용도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됨. 참고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포함해서 의원실당 전체 지원예산은 2021년 기준 연 9,849만 원으로 거의 1억에 가까움

[표 4-54] 지원예산 의원실당 배정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방법	지원근거규정	
사무실 운영지원	사무실 운영비	비서실운영비	월 180,000원	· 정액 지급	
		업무추진비	연 3,483,840원	· 증빙 후 사후지급	
	공공요금(전화우편 등)		월 950,000원	· 정액 지급 · (월 95만원에서 전화 요금 공제)	
	사무실 소모품비		연 5,192,000원	· 현물: 소모품 신청서 · 현금: 증빙 후 사후지급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의원차량유류비		월 1,100,000원	· 정액 지급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 제2조
	의원차량유지비 (위원장)		월 358,000원 (월 1,000,000원)		
	공무수행출장비		연 평균 5,714,790원	·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권역별 차등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 25,603,330원	·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정책자료 발송료		연 평균 6,342,190원	·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세대수별 차등	
	정책자료발간 및 의원정책홍보물유인비		연 12,000,000원	·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보좌직원 매식비		연 7,036,660원	·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연 1,071,180원		
	의원실 업무용택시비		연 1,000,000원		
합계		연 98,499,990원			

※단,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월 67만원 지급함
자료: 국회사무처(2021)

(2) 업무추진비

- 다음으로 국회의원에게는 업무추진비가 지원됨. 업무추진비는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에 드는 경비로 의원실당 연 3,483,840원을 지원함
- 업무추진비의 용도 중 대표적인 것이 의회외교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국회사무처, 2021)
 - 방문외교: 공식 오·만찬개최비용, 차량임차료 등 지원
 - 초청외교: 공식 오·만찬비용 등
 - 국제회의 참석: 공식 오·만찬개최비용, 차량 임차료 등 지원

(3) 후원금

-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함
-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포함),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3>

[그림 4-6] 후원금 체계

(4) 기타

- 이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결성된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통한 활동경비 지원이 이루어짐

4) 국회의원 수당 종합 및 비교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할범위와 대표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수당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이는 약 2.6배이고, 국회의원은 기본급적 성격의 일반수당과 부가급여형 수당의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그렇지 못함. 또한, 수당의 종류를 보면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외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 수당을 거의 모두 받고 있음. 이에 반해 지방의회의원은 월정수당이라는 일반수당 외 별도의 수당이 없음

[표 4-55] 국회의원 수당 종합 및 비교: 수당 등

구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고	
수당	일반수당	월정수당 (광역평균, 연 4,217만 원/ 인천시, 연 4,235만 원)	2022년 기준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 기본수당	X X	일반직 4급이상 모든 공무원
	정근수당	• 상여수당	X	근무연수10년 이상 50%
	명절휴가비		X	연 120%
	가족수당	• 기타수당(조건부 지급)	X	-
	자녀학비보조수당		X	-
	직급보조비	• 국회의장, 부의장, 위원장	X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간
입법활동비	매월 지급(3,136,000원)	의정활동비(매월 150만 원) -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매월 120만 원) - 보조활동비 (매월 30만 원)	비과세에 대한 논쟁	
특별활동비	회기중 지급 (입법활동비의 30/100)	• 실비변상적 성격(비과세) •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 집행 • 입법 및 특별활동비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대상으로 전환 논의 중(비과세에 대한 비판의견)		
계	연 154,263,460원/ 월 12,855,280원	연간 광역평균 60,170,000원 인천시 60,350,000원	2.6배	

○ 다음으로 국회의원은 수당 외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수당 외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음

[표 4-56] 국회의원 수당 종합 및 비교: 수당 외 재정지원

구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의원실당 연 25,603,330원	·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용역 등 지원	X	(국회)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특정업무경비, 포상금 등으로 예산편성
여비	공무로 인한 여행	-	공무로 인한 여행	-
업무추진비	의원실당 연 3,483,840원 의회외교활동 위한 경비	·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대민 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 협의, 언론인 및 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중무식에 드는 비용 · 국회의 경우 주로 국회의장단 활동비,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비, 대내외 행사 지원비 등에 지출	의장, 부의장, 위원장 O 평의원 X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240-01) /관서업무추진비(240-0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6)	
후원금	국회의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내경선후보자 *연간한도액: 1억5천만 원	-	현직 지방의원 X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O *연간한도액: 선거비용제한액의 50/100	정치자금법 제6조, 제12조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정책 및 활동지원경비	· 정치자금법 제27조,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	재정지원 법적 근거 없음	-

2. 지방공무원 보수와 비교

1) 공무원 보수체계

-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임
- 일반직 등 직군에 따라 급여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공무원 임금체계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제와 연봉제임.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 등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음.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구분 가능한데, 고정급적 연봉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고, 성과급적 연봉제는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적용됨

[표 4-57]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대상공무원	구분
1.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임. 공무원 수당은 수당 35종과 실비보상 등 4종 전체 39종의 수당으로 구성됨

[표 4-58] 공무원 수당체계

구분		수당
수당 (35종)	상여수당(4종)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5의2)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6)
		· 정근수당가산금(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6③)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6의2)
		·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9)
	가계보전수당(3종)	· 가족수당(배우자 : 월4만원, 자녀 : 첫째 월2만원, 둘째 : 월6만원, 셋째 이후 : 월10만원, 배우자 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 월2만원)(§10)
		·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과건공무원 국외 취학자녀에만 적용)(§3)
		·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11조의2)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적과 접촉하는 지역 근무자(월 3~6만원, 서해5도 조례) · (§12)
	특수근무수당(23종)	· 위험근무수당(9개부문 39개 위험직무종사자, 월4~6만원)(§13)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3종)(§14)
		·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14조의2)
	초과근무수당등(4종)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일반 연구 지도직 5급 과장급 공무원)(§17의2)		
실비보상등 (4종)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18)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연 2회(§18의5)
	직급보조비	· 월 15.5~124만원(§18의6)

자료: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공무원 임금 인상률

- 매년 물가상승률, 민간 고용시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함. 2021년 대비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로 2011년 이후 최소 0.9%(2021년)~최대 5.1%(2011년)의 범위로 인상함



자료: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536#home>

[그림 4-7] 공무원 임금 인상률

[표 4-59] 공무원 처우 개선율

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율	민간대비 공무원보수	기본급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
2011	5.1%	85.2%	3.3%	4.0%
2012	3.5%	83.7%	4.1%	2.2%
2013	2.8%	84.5%	3.3%	1.3%
2014	1.7%	84.3%	2.0%	1.3%
2015	3.8%	83.4%	4.5%	0.7%
2016	3.0%	83.2%	3.4%	1.0%
2017	3.5%	86.0%	3.67%	1.9%
2018	2.6%	85.2%	2.956%	1.5%
2019	1.8%	86.1%	2.040%	0.4%
2020	2.8%	90.5%	3.167%	0.5%
2021	0.9%	-	1.016%	2.5%

자료: e-나라지표, 공무원 보수 추이; 소비자물가지수

2) 공무원 종류, 직위, 직급별 보수와 의정비 비교

(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 2022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 원(인사혁신처고시 제2022-3호)으로 2021년 535만 원보다 소폭 증가함

(2)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으로, 연봉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2018년 대비 2021년 6.0% 증가함(2020년 대비 2021년에 3.2% 증가함). 부자치단체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증가율은 더 낮음
-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는 단체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지방의회 의정비 대비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연봉: 의정비 전체는 2.2배, 월정수당은 3 배 수준임(광역의원 월정수당 4,217만 원, 의정비 전체 6,017만 원)

[표 4-60]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 원)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특별시		128,154	129,008	131,640	135,809	137,189
광역시도 단체장,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의 교육감		124,459	125,289	127,845	131,894	133,234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자치단체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	108,855	109,581	111,817	115,359	116,531
	부자치단체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	100,364	101,033	103,094	106,359	107,440
	부자치단체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	93,699	93,699	95,611	98,639	99,642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

- 고정급적연봉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함

(3)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여기서는 성과급적 연봉제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고, 기본연봉에는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의 연액이 포함됨
- 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금액임. 연봉의 급여로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가 있음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이 이에 해당됨.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제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
- 지방의회 의정비와 비교했을 때 실국장급인 3급(상당)의 하한액보다 낮고, 월정수당과 비교했을 때는 과장급인 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 하한액보다 낮음

[표 4-61] 성과급적연봉제 연봉한계액표(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 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20,134	80,080
2급(상당) 공무원	111,028	73,983
3급(상당) 공무원	103,218	69,337
4급(상당) 공무원	94,424	54,882
5급(상당) 공무원	83,632	37,161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4) 호봉제 공무원과 비교

- 1급~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제와 비교함. 지방공무원(광역기준) 3급(국장급) 2호봉, 4급 6호봉과 비교할 때 인천시의회 2022년 월정수당(353만원)과 비슷함

-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외 다양한 수당들이 있어 수당을 모두 합하면 보수 수준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보다 많음. 다만 의정활동비를 합할 경우 거의 유사함(그러나 이도 모든 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통상임금 성격이 강한 수당만 포함함)

[표 4-62]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표 4-63] 공무원 통상임금(일부)

(단위: 원)

	봉급 (기본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액	월액
4급 6호봉	3,533,000	3,533,000	317,970	140,000	400,000	56,224,640	4,685,387
3급 2호봉	3,528,900	3,528,900	317,601	140,000	500,000	57,366,912	4,780,576
지급 기준		10년이상	4급이상	모든 공무원	모든 공무원	-	-
비고	월	연	월	월	월		

(5) 공무원 보수와 종합 비교

- 공무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지방의원 의정비의 인상요인이 있음. 다만 지방의원의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몇 급 대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표 4-64] 공무원 보수와 지방의원 의정비 비교(2022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금액		
			연액	월액	
공무원 보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6,468	539	
	광역 시도 단체장		13,323	1,110	
	1급~5급 상당 성과급적 연봉제	3급상당	상한 10,322 ~ 하한 6,934	상한 860 ~하한 533	
			4급상당	상한 9,442 ~ 하한 5,488	상한 787~ 하한 454
	일반직 공무원 호봉제	3급 2호봉	기본급	4,234	352
			정액수당포함*	5,737	478
		4급 6호봉	기본급	4,240	353
정액수당포함*			5,622	469	
지방의 원	광역 (평균)	월정수당	4,217	351	
		의정활동비	1,800	150	
		의정비 합계	6,017	501	
	인천	월정수당	4,235	353	
		의정활동비	1,800	150	
		의정비합계	6,035	503	

주: 포함된 정액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임

3. 공공기관 보수(임금)과 비교

1) 공공기관의 직원 및 기관장 보수

-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연봉은 2021년 69,756천 원으로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2.33% 인상되었음. 가장 직원보수가 높은 기관은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2021년 기준 85,697천 원이고, 가장 낮은 기관유형은 위탁집행형으로 65,073천 원임

[표 4-65]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보수(연봉)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66,502	67,499	68,170	68,146	69,319	69,756
공기업	78,387	78,308	78,523	79,478	81,555	80,951
시장형	81,249	81,910	82,632	84,300	85,823	85,697
준시장형	76,097	75,427	75,236	75,620	78,142	77,561
준정부기관	64,172	64,518	65,234	65,632	66,814	67,113
기금관리형	76,703	76,973	77,739	78,649	80,141	80,451
위탁집행형	62,255	62,657	63,366	63,687	64,823	65,073
기타공공기관	65,579	67,082	67,815	67,457	68,503	69,147

*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일반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무기계약직 미포함)

-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180,723천 원으로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5.75% 인상되었음. 가장 기관장 연봉이 높은 기관은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으로 2021년 기준 257,414천 원이고, 가장 낮은 기관유형은 위탁집행형으로 178,392천 원임

[표 4-66] 공공기관 기관유형별 기관장 보수(연봉)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166,661	167,800	170,895	176,624	179,975	180,723
공기업	201,871	198,607	196,266	210,903	215,120	204,328
시장형	191,720	201,934	209,860	232,153	229,519	218,650
준시장형	209,992	195,946	185,391	194,965	204,321	194,098
준정부기관	172,948	171,730	175,680	181,448	184,852	187,938
기금관리형	224,421	205,759	225,002	238,109	239,448	247,414
위탁집행형	164,687	166,335	167,954	172,574	176,301	178,392
기타공공기관	157,274	160,389	164,199	168,629	171,965	173,714

2) 공공기관의 보수와 지방의원 의정비 비교

- 공공기관 직원, 기관장 평균 연봉 모두 지방의원 의정비보다 높음. 월정수당보다는 당연히 높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 전체를 비교하더라도, 직원은 1.2배, 기관장은 3.0배 지방의원 의정비 보다 높음

[표 4-67] 공공기관과 비교

(단위: 만원, %)

2021년 기준	지방의원 의정비(만 원)(연간)			공공기관 평균연봉		비교 (의정비대비 공공기관 평균연봉 비율)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	직원	기관장	직원	기관장
광역(평균)	4,182	1,800	5,982	6,976	18,072	1.2	3.0
인천	4,207	1800	6,007			1.2	3.0

4.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보수(임금)과 비교

1) 공공기관의 직원 및 기관장 보수

-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의 보수와 비교하는데,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함
 - 출자기관은 인천시의 출자지분에 따라 인천시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수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22년 기준 5개 공사공단, 9개 출연기관을 비교함
- 전체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직원의 연봉은 2020년 59,733천 원으로 공사공단은 2021년 기준 61,754천원, 출연기관은 2020년 기준 59,000천원임
 - 공사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6.3% 인상되었음
 - 출연기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5.0% 인상되었음. 이는 일부 기관들(여성가족재단, 재법인인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보수 합리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표 4-68]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보수(연봉)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51,250	55,188	57,748	56,947	59,733	61,754
공사공단	-	58,089	59,344	59,452	61,053	61,754
출연기관	51,250	53,375	56,750	55,556	59,000	-

* 클린아이에 제시된 정보가 공사공단은 2017~2021년, 출연기관은 2016~2020년으로, 2016년은 출연기관의 평균 보수, 2021년은 공사공단 평균 보수값을 전체평균으로 봄

** 직원 보수는 정규직 보수임

자료: 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2022년 기준 평균 106,400천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5.32% 인상되었음
- 2022년 기준 공사공단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00,324천 원이고, 출연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09,776천 원으로 나타남

[표 4-69]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기관유형별 기관장 보수(연봉)

(단위: 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전체	101,021	101,732	102,486	102,664	106,400
공사공단	97,083	97,335	98,971	100,043	100,324
출연기관	104,302	104,481	104,682	104,120	109,776

* 기본연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평가급은 제외함

자료: 인천광역시 공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작성요청함

2)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보수와 지방의원 의정비 비교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보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와 거의 유사함. 다만 2021년 공사공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천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보다 공사공단의 보수가 높음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 모두 지방의원 의정비보다 높음. 월정수당보다는 당연히 높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 전체를 비교하더라도 기관장의 연봉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보다 1.8배 높음

[표 4-70] 인천광역시 공공기관과 비교

(단위: 만원, %)

2021년 기준	지방의원 의정비(만 원)(연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평균연봉		비교 (의정비 대비 공공기관 평균연봉 비율)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	직원	기관장	직원	기관장
광역(평균)	4,182	1,800	5,982	5,933*	10,640	0.99	1.8
인천	4,207	1800	6,007			0.99	1.8

* 직원은 2020년 기준임

3. 민간기업 급여와 비교

1) 민간기업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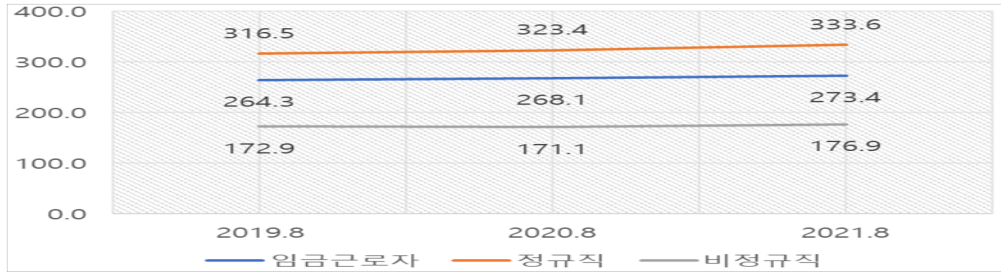
- 민간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기준 333.6만 원임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전체) 273.4 (만원) <small>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08월</small>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정규직) 333.6 (만원) <small>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08월</small>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비정규직) 176.9 (만원) <small>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08월</small>
---	--	---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4-8]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 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계속 상승하여 2019년 대비 2021년 5.4% 상승함



[그림 4-9] 민간기업 월평균임금 변화

- 임금은 민간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월 임금 총액은 3,757이고, 5~9인 규모는 2,987천 원이고,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5,794천 원임

[표 4-71] 규모별 임금(2021년 기준)

(단위: 천 원)

규모별	월임금 총액	월급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년도 연간특별급여/12개월	연간 특별급여
전규모 (5인 이상)	3,757	3,318	3,118	200	439	5,268
1 규모 (5 ~ 9인)	2,987	2,811	2,751	60	177	2,120
2 규모 (10 ~ 29인)	3,281	3,031	2,900	132	249	2,991
3 규모 (30 ~ 99인)	3,382	3,105	2,892	212	277	3,325
4 규모 (100 ~ 299인)	3,809	3,412	3,143	269	398	4,770
5 규모 (300 ~ 499인)	4,396	3,779	3,490	289	617	7,399
6 규모 (500인 이상)	5,794	4,485	4,125	360	1,308	15,6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편 직종에 따른 임금을 보면 관리자는 월 1,039천 원이고, 사무종사자는 419만 원임

2) 민간기업 급여와 비교

- (규모별) 지방의원 의정비는 중소기업 임금보다 높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의 임금보다는 낮음. 인천시 의정비는 500인 사업장 임금의 87.5% 수준임

○ (직종별) 지방의원 의정비는 민간기업의 관리자 임금의 1/2 수준임

[표 4-72] 민간기업 임금과 의정비 비교

(단위: 만원)

2021년 기준	지방의원 의정비(월)			민간기업 1 근로자 월임금총액		민간기업 2 직종별 월임금총액	
	월정수당	의정 활동비	합	300인~49 9인 사업장	500인 사업장	관리자	사무종사 자
광역(평균)	349	150	499	439	579	1,039	419
인천	351	150	501				

6. 종합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비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급적 성격의 일반수당과 부가급 여형 수당의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수당의 성격인 월정수당만 받으며 수당에서 약 2.6배의 차이를 보임

[표 4-73]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수 수준 비교

지방의원(2022년)			국회의원(2022년)	
구분	보수		구분	보수
수당	4,217		수당	6,907
입법활동비	300		입법활동비	3,136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30/100
입법 및 정책개발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2,560
여비	공무로 인한 여행		여비	공무로 인한 여행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위원장만 지급		업무추진비	348
후원금	(연간 한도) 선거비용제한액 50/100		후원금	(연간 한도) 15,000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경상보조금 등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계(2022년)	광역평균	6,017	계	15,426
	인천시	6,035		
			지방의원 대비 보수 수준	2.56

-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수당이 있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에 비해 더 높은 보수 수준을 가지고 있음. 지방의원 의정비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몇 급 대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공공기관 평균 직원과 기관장의 평균 연봉 모두 지방의원 의정비보다 높으며, 인천광역시 기관장의 평균연봉보다 높음
- 민간기업 역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이 더 높은 수준임

[표 4-74]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보수 수준 비교

(단위: 만 원)

(지방)공무원(2022년)			공공기관(2021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기관장(2021년)			민간기업(2021년)			
구분	보수	지방의원 대비 보수수준	구분	보수	지방의원 대비 보수수준	구분	보수	지방의원 대비 보수수준	구분	보수	지방의원 대비 보수수준	
공무원 전체	6,468	1.07	전체	6,976	1.17	전체	10,266	1.71	전규모 (5인 이상)	5,039	0.84	
광역시· 도 단체장	13,323	2.21	공기업	8,095	1.35	공사공단	10,004	1.67	1규모 (5인-9인)	3,800	0.64	
성과급적 연봉제 (3급 상당)	상한	10,322	1.72	시장형	8,570	1.43	출연기관	10,412	1.73	2규모 (10인 -29인)	4,235	0.71
	하한	6,934	1.15	준시장형	7,756	1.30				3규모 (30인 -99인)	4,389	0.73
성과급적 연봉제 (4급 상당)	상한	9,442	1.57	준정부기관	6,711	1.12				4규모 (100인 -299인)	5,049	0.84
	하한	5,488	0.91	기금관리형	8,045	1.34				5규모 (300인 -499인)	6,020	1.01
일반직 공무원 (3급 2호봉)	기본급	4,234	0.70	위탁집행형	6,507	1.09				6규모 (500인 이상)	8,530	1.43
	정액 수당포함	5,737	0.95	기타공공기 관	6,915	1.16				2021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광역평균: 5,982 *인천시 평균: 6,007		
일반직 공무원 (4급 6호봉)	기본급	4,240	0.70									
	정액 수당포함	5,622	0.93									

주: 공공기관은 직원,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은 기관장, 민간기업은 직원보수와 비교함

제5장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의 개편방안

제1절 의정비 제도의 법적·제도적 개편방안

제2절 인천광역시의회 합리적 의정비 산출기준

